월간

재정포럼

2024. July
Vol.337
07

권두칼럼
재정형평화 기준 설정의 필요성
| 주만수

현안분석
글로벌 최저한세와 R&D
| 홍병진

정책연구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자발적 탄소시장(VCM) 원칙 및 성명 발표 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재정포럼

2024.07. **Vol.337**

월간 재정포럼 2024년 7월호 **통권** 제337호_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02 재정형평화 기준 설정의 필요성 | 주만수

현안분석

08 글로벌 최저한세와 R&D | 홍병진

정책연구

40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

57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 이경영·최근호

60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 양은주·윤영훈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64 미국 - 자발적 탄소시장(VCM) 원칙 및 성명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형평화 기준 설정의 필요성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지방재정 정책의 핵심과제: 재정형평화

우리나라 지방재정 정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과제는 지역 간 재정형평화일 것이다. 재정형평화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에 비해 경제력이 열악하여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적을 것이라고 상정하여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누구나 이 정책목표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이지만, 그 격차를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해소, 특히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방지 대책 논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인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의 재원배분이 비수도권에 지나치게 우호적이어서 형평화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간 재정형평화의 현황과 쟁점

재정형평화의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 간 재원배분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2022년 시도별 일인당 지방세를 비교하면, 가장 큰 서울은 306.9만원으로 가장 작은 전북의 186.5만원을 크게 초과한다. 반면에 일인당 지출은 502.2만원인 서울에 비해 930.7만원인 전북에서 더 크다. 이러한 일인당 지방세와 일인당 지출 간 재원의 역전현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의 일인당 지방세는 108.6만원으로 전남 구례군 64.8만원의 거의 두 배

인 반면, 이들의 일인당 지출은 각각 275.1만원과 2,018.1만원으로 오히려 구례군이 7배 이상 크다.

이러한 자치단체 간 주민 일인당 지방세 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먼저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력이 우수하므로 혹은 경제력이 우수할수록 인구가 밀집되므로, 일인당 지방세 수입이 더 크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지방세 세목인 지방소득세, 주택분 재산세 및 취득세 세율은 누진체계이므로 경제력이 우수하거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지방세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자치단체 간 일인당 지방세 수입의 격차를 확대한다. 반면에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에 재원을 더 많이 이전하므로 결국 일인당 지방세와 재정지출 간 심각한 역전을 초래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에 재원을 더 많이 이전하므로 결국 일인당 지방세와 재정지출 간 심각한 역전을 초래한다.

이러한 재정력 역전 현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소비하는 지방공공재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 일인당 공급비용이 더 비싸지는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일인당 지출이 더 커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재원이전에 의한 재정력 역전은 불가피하다.

이 논리와 달리, 지방공공재의 일인당 공급비용은 오히려 수도권에서 더 높거나 지역 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도 존재한다. 동일한 대기환경 및 도로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은 오히려 인구밀집지역에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출에서 비중이 급증한 복지지출은 복지대상 주민 개인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크므로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재정형평화의 대표적 사례를 독일의 주정부 간 재정형평화에서 관찰할 수 있다.

재정형평화의 과제와 방향: 독일의 사례와 우리나라

독일은 두 단계로 재정형평화를 시도한다. 먼저 일인당 지방세 수입이 전국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주정부가, 이에 미달하는 주정부들에게 누진적 대칭구조로 재원을 이전한다. 즉, 전국 평균을 표준 재정수요로 인식하고 이에

재정형평화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가장 큰 차이는 일관된 재정형평화 목표의 존재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재정형평화 정책은 서로 다른 기준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서 궁극적인 재정형평화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다.

서 멀어져서 우수할수록 더 높은 비율로 재원을 갹출하고, 열악할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한다. 각 주정부의 표준 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일부 구 동독지역의 재정수요에 대해 최대 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면, 대도시는 3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수평적 재정조정 이후에도 표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주정부에 부족액의 일정비율까지 일반보충교부금을 배분하여 형평화를 도모한다. 2020년 주정부들의 일인당 지방세 수입은 전국 평균의 56.3~147.5%의 범위에 산재하여 큰 격차를 나타내지만, 형평화 이후의 일인당 재정수입은 97.8~108%로 크게 완화된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형평화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간 일인당 재원의 순위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재정형평화로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과 일인당 재원의 형평화를 실현하는 것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기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자체에 의해 제도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다. 이보다 재정형평화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가장 큰 차이는 일관된 재정형평화 목표의 존재 여부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재정형평화 정책은 서로 다른 기준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서 궁극적인 재정형평화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다. 가장 대표적인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 표준적인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산정하고 그 부족액을 배분한다. 표준적인 재정수요는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며, 특히 인구가 적은 경우 일인당 재정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도록 산정하고 부족재원을 배분하므로 보통교부세 배분 후 일인당 재원의 크기를 역전시킨다. 보통교부세 배분을 위해 산정한 표준적 수요액 대비 수입액의 비율인 재정력지수를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의 다른 이전재원 배분에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형평화한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예산규모 대비 자체재원과 자주재원의 합계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 높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재정형평화를 시도한다. 그 외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최근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도 재정요건을 고려하여 재정력 취약 지역에 우호적으로 배분하므로 재정형평화를 더욱 강화한다. 심지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로 조성한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도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을 고려하면, 지역 간 재정력 역전 현상은 통계자료에 나타난 것보다 더욱 확대된다.

재정형평화의 목표 설정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

이처럼 정부는 재정형평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재정형평화 기준은 없으며,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게 배분하므로 실제 이루어진 형평화 수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재정형평화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달성하려는 재정형평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이전제도들에 의한 재정형평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립하거나 이들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물론 재정형평화로 인해 재정분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상해야 한다. KIPF

재정형평화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재정형평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이전제도들에 의한 재정형평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립하거나 이들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현안분석

글로벌 최저한세와 R&D

홍병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글로벌 최저한세와 R&D

+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bjhong@kipf.re.kr

Ⅰ. 서론

사람들은 기술발전의 혜택을 받는다. 컴퓨터의 개발과 인터넷의 탄생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간의 생활 방식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사회와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뜨거운 논의가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도 기술발전에 의해 바뀐 조세환경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적 변화라 볼 수 있다.

최근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의 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양자 협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G20 및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가지고 총 138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 끝에 결정된 디지털경제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안 중 하나인 글로벌 최저한세의 전세계적 시행이 눈앞이다.[1)]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선제적으로 2022년

1) 첫 번째 대응방안(Pillar 1, 통합접근법)은 물리적 사업장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적으로 정한 공식을 적용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응방안(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그 차이에 대해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룬다.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5장(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을 신설하여,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하였고,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골자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의 총매출이 7억 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2] 이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약 200~300여 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LG 화학, SK, 한화, 삼성 SDI 등의 몇몇 기업은 타국에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커 수천억 단위의 추가적인 세액 부담이 늘 것으로 예측된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다. 추가적인 세부담은 기업의 여러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기업 특성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인 고용과 투자가 아닌 연구개발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다국적기업 대부분이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기술격차의 우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정책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예외 조항들이 유형자산과 급여비용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우리나라와 같이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시사하는 바가 보다 클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R&D 현황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모형, 변수 설정,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Ⅱ. 연구 배경

1. 현황

가. R&D 현황

1) R&D 투자 현황

R&D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

2)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한국경제, 「"수천억 토해낼 판" LG화학 쇼크…SK·한화도 '초비상'」, 검색일자: 2024. 2. 19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중소기업의 수가 벤처기업보다 많은 반면에, 사용한 총액은 벤처기업이 보다 높아 벤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원의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총연구개발비는 2022년 기준 112조 6,460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다.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8년 4.52%에서 2022년 5.21%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 2위 수준이다.

<표 1> 총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연구개발비	857,287	890,471	930,717	1,021,352	1,126,460
GDP 대비 비중	4.52	4.63	4.80	4.91	5.21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총연구개발비의 재원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외국재원의 비중이 약 77% 전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2022년 기준 민간·외국재원의 비중이 76.6%이고, 정부·공공재원의 비중이 23.4%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86조 3,177억원과 26조 3,283억원이다. 총연구개발비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원별 금액도 비슷하게 증가하여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표 2> 재원별 연구개발비 분포

(단위: 억원, %)

구분	총 연구개발비	비중		금액	
		민간·외국	정부·공공	민간·외국	정부·공공
2018년	857,287	78.6	21.4	673,828	183,459
2019년	890,471	78.6	21.4	699,910	190,561
2020년	930,717	76.8	23.2	714,791	215,926
2021년	1,021,352	76.4	23.6	780,313	241,039
2022년	1,126,460	76.6	23.4	862,868	263,592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기업부문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기업이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유사하며, 중소기업이 제일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새롬·한응용(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68개의 대기업, 1,708개의 중견기업, 3만 5,282개의 중소기업, 2만 3,469개의 벤처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기업이 같은 해에 55조 1,706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은 규모가 크며 특정 분야에 밀도 높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중소기업의 수가 벤처기업보다 많은 반면에, 사용한 총액은 벤처기업이 보다 높아 벤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선도 기술을 가진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분포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기준					
대기업	438,236	446,658	451,694	491,394	551,706
중견기업	95,954	101,864	103,691	114,751	125,041
중소기업	74,883	80,048	79,341	85,251	94,227
벤처기업	79,272	86,497	101,272	116,681	123,239
비율 기준					
대기업	63.7	62.5	61.4	60.8	61.7
중견기업	13.9	14.2	14.1	14.2	14.0
중소기업	10.9	11.2	10.8	10.5	10.5
벤처기업	11.5	12.1	13.8	14.4	13.8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가 대부분이며, 최근 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최근 제조업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제조업의 비중이 86%로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개발비가 제조업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표 4> 산업별 연구개발비 분포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기준					
제조업	611.572	625.550	638.163	695.560	768.956
서비스업	65,349	75,823	84,130	99,188	111,953
기타	14,424	13,694	13,704	13,328	13,305
비율 기준					
제조업	88.8	87.5	86.7	86.1	86.0
서비스업	9.1	10.6	11.4	12.3	12.5
기타	2.1	1.9	1.9	1.6	1.5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수준이 상위권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 중에서 조세지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며, 선도 기술을 가진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R&D 조세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 중에서 조세지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다.[4]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내국법인(거주자)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소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5]

구체적인 세제지원 혜택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각각의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한 다음에 모든 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표 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총세액공제금액 = (① or ②) + ③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A + B) A: 중소기업일 경우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그 밖의 경우 20% B: 당기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3배의 금액을 당기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 한도는 10%이고,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5%가 한도임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A + B) A: 중소기업일 경우 40%, 그 밖의 경우 30% B: 당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3배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 한도 10%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A or B[1] A: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분에 일정비율의 곱한 금액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25%) B: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그 외의 경우에는 당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당기수입금액을 나눈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한도는 2%)

주: 1)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B를 적용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2019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9조)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2018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가 있었으나 폐지되었고, 해당 부분이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5)로 일부 반영되었다. 2020년에는 조특법 제25조와 제25조의5가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로 통합되었다.

5) 보다 구체적인 인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의3, 별표7, 별표7의2에 자세히 나열되어있다.

한다. 이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조특법」 제132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대상 세제 혜택이 아니나, 그 외의 기업과 거주자에게는 최저한세 대상이다.

신고연도 기준 최근 5개년(2018~2022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총합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지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증가세는 특정 세부 분야(일반, 신성장, 국가전략)에서도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22년 신고연도부터 반도체 및 소부장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면서 직전연도 대비 약 37%나 조세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점차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조세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서는 현격하게 그 비중이 줄고 있어 총합 대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대상 세제 혜택인 것을 감안하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대상 세제 혜택인 것을 감안하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	신고법인 수	30,121	33,925	37,299	38,130	41,191
	금액	2,155,315	1,954,321	2,197,384	2,033,396	2,285,759
	중소기업 비중[1]	55.63	63.54	58.30	62.27	63.49
신성장	신고법인 수	232	197	226	283	306
	금액	144,463	276,216	445,632	600,852	879,128
	중소기업 비중[1]	13.44	8.30	4.64	4.52	3.32
국가전략	신고법인 수	-	-	-	-	24
	금액	-	-	-	-	452,435
	중소기업 비중[1]	-	-	-	-	0.39
총합[1]		2,299,778	2,230,537	2,643,016	2,634,248	3,617,322
총합 대비 중소기업 비중[1]		52.98	56.70	49.25	49.10	40.97
총세액공제 대비 비중[1]		30.43	35.36	31.32	33.12	26.66
총공제감면세액 대비 비중[1]		25.61	31.05	29.07	31.77	27.93

주: 1) 금액(백만원) 기준이며, 벤처기업 포함

출처: 국세통계연보 출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원 방식과 무관하게 기업 R&D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현재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 우위 선점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R&D 재정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R&D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4조원 전후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19.7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재정지출의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R&D 분야 재정지출도 2019년 20.5조원에서 2021년에는 2010년 이래로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여 2023년에는 31.1조원을 기록하였다.

총재정지출 대비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R&D 분야 지출의 증가보다 총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 2010년 이후 R&D 분야의 비율은 꾸준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재정지출의 5%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재정지출에서 R&D 분야가 차지하는 순위로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2021년을 제외(6위)하고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D 분야의 재정지원은 다양한 연구수행주체를 지원한다.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와 같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R&D 분야 재정지출의 집행액 기준으로 출연연구소가 약 9.1조원 수준으로 총R&D 분야의 집행액 대비 약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R&D 분야의 재정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대학이 5.9조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총R&D 분야의 집행액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대학과 유사한 수준인 약 5.9조원을 매년 지원 받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4.1조원), 중견기업(1.6조원), 대기업(0.2조원) 순으로 지원 금액이 크다. 다만, 과제별 집행액은 2022년 기준 대기업이 12.7억원, 중견기업이 14.7억원, 중소기업이 2.7억원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보다 대규모 과제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6)]

나. 선행연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조세부문과 재정부문 모두에서 기업 R&D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원 방식과 무관하게 기업 R&D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현재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기술 우위 선점 및 유지에 중요

6)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23)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통계표」의 기업규모별 집행금액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기업규모별 중점과학기술분야 수행과제수를 나누어 산출함

<표 7> 분야별 재정지출(12대 분야)

(단위: 조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건·복지·고용	81.2	86.4	92.6	97.4	106.4	115.7	123.4	129.5	144.7	161.0	180.5	199.7	217.7	226.0
일반·지방행정	48.7	52.4	55.1	55.8	57.2	58.0	59.5	63.3	69.0	76.6	79.0	84.7	98.1	112.2
교육	38.3	41.2	45.5	49.8	50.7	52.9	53.2	57.4	64.2	70.6	72.6	71.2	84.2	96.3
국방	29.6	31.4	33.0	34.3	35.7	37.5	38.8	40.3	43.2	46.7	50.2	52.8	54.6	57.0
R&D	25.1	24.4	23.1	24.3	23.7	24.8	23.7	22.1	19.7	20.5	24.2	27.4	29.8	31.1
산업·중소·에너지	17.3	17.6	18.1	18.4	18.7	19.3	19.4	19.6	16.3	18.8	23.7	28.6	31.3	26.0
SOC	15.1	15.2	16.0	16.9	17.7	18.9	19.1	19.5	19.0	19.8	23.2	26.5	28.0	25.0
농림·수산·식품	13.7	14.9	14.5	15.0	15.8	16.9	17.5	18.1	19.7	20.0	21.5	22.7	23.7	24.4
공공질서·안전	12.9	13.7	15.1	15.5	15.4	16.4	16.3	16.0	19.1	20.1	20.8	22.3	22.3	22.9
환경	5.4	5.8	6.0	6.3	6.5	6.1	6.6	6.9	6.9	7.4	9.0	10.6	11.9	12.2
문화·체육·관광	3.9	4.2	4.6	5.0	5.4	6.8	6.9	6.9	6.5	7.2	8.0	8.5	9.1	8.6
외교·통일	3.3	3.7	3.9	4.1	4.2	4.5	4.7	4.6	4.7	5.1	5.5	5.7	6.0	6.4
합계	294.5	310.9	327.5	342.8	357.4	377.8	389.1	404.2	433.0	473.8	518.2	560.7	616.7	648.1
R&D 비율	8.52	7.85	7.05	7.09	6.63	6.56	6.09	5.47	4.55	4.33	4.67	4.89	4.83	4.80

주: 모든 금액은 세출 예산 기준이며, 집행액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출처: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출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8> 연구수행주체별 R&D 재정지원 집행액

(단위: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공립연구소	10,245	5.2	10,527	5.1	11,323	4.7	12,313	4.6	13,024	4.5	11,486	4.8
출연연구소	80,502	40.7	82,597	40.0	90,289	37.8	96,058	36.1	103,737	36.2	90,637	38.2
대학	45,365	22.9	59,278	24.4	57,508	24.1	63,317	23.8	69,738	24.3	59,041	23.9
대기업	4,162	2.1	3,735	1.8	3,820	1.6	4,327	1.6	5,889	2.1	4,387	1.8
중견기업	10,692	5.4	14,165	6.9	18,212	7.6	16,166	6.1	18,716	6.5	15,590	6.5
중소기업	31,840	16.1	30,910	15.0	39,753	16.6	49,721	18.7	54,924	19.2	41,430	17.1
정부부처	2,993	1.5	1,829	0.9	1,914	0.8	2,634	1.0	626	0.2	1,999	0.9
기타	11,960	6.0	12,212	5.9	15,986	6.7	21,254	8.0	20,128	7.0	16,308	6.7
합계	197,759	100	206,254	100	238,803	100	265,791	100	286,782	100	239,078	100.0

주: 제시된 금액은 집행액 기준이며,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출처: 김한울·김은정,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11.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지원방식별 여러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 조세지원의 효과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조세지원의 효과는 주로 세제 혜택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대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원종학·김진수(2006)에서는 기업의 세액공제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액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양(+)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대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에 대한 탄력성은 0.306으로 중소기업의 탄력성은 0.135로 추정되었다.

최대승(2013)은 2006~2008년 기업의 조세감면액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다르게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유보이익을 통해 차기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전기의 조세감면에 따른 차기 연구개발 투자의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기업의 조세감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탄력성은 0.2284로 추정되었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업의 탄력성이 대기업(0.5589), 벤처기업(0.3428), 중소기업(0.1865) 순으로 높았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0.6042), 벤처기업(0.5531), 대기업(0.2788) 순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재무적으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윤성주·노민선(2015)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5년간(2009~2013년)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7% 수준으로 전체 평균인 13.4%에 비해 높은 것을 파악하였다. 2013년의 세액공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세액공제 신고액 2조 8,494억원 중 67.8%가 일반기업에 귀착되고, 32.2%가 중소기업에 귀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총세액공제 신고액의 6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개사당 평균 세액공제 규모에서도 대기업은 11.8억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은 1.4억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학수 외(2018)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 납세 자료를 분석하

여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전기 연구개발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동적 패널(dynamic panel) 분석 모형을 주로 고려하여 세액공제별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총액 방식의 경우, 세액공제율의 1%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2.9%, 장기적으로는 9.8% 수준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증가분 방식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율의 1% 증가는 단기적으로 3.7%, 장기적으로 8.4%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1% 세액공제율이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1.7%, 장기적으로 11.8%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과거의 연구와 동일하게 대기업은 다른 규모의 기업보다 제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보였다.

김빛마로·윤성주(2021)는 보다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2012~2019년의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김학수 외(2018)에서 고려한 동적 패널 분석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세액공제율 1%의 확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출을 0.2% 상승시키는 것을 보였으며, 이러한 반응 정도는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서로 탄력적인 것을 보였다.

이외에도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문진주·홍기용(2019)은 조세지원이 바이오산업과 같은 과학기반 산업에서 기술혁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김형진·전봉걸(2020)은 조세지원이 기업의 성장성, 고용 및 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기업과 상향점수매칭 방법을 사용하여 보였다. 임홍래·한동숙(2022)은 R&D 조세지원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 기업의 특허 수를 약 0.52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추정하였다. 대기업의 경우 약 1.74건, 중소기업의 경우 약 0.36건의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였다.

2) 재정지원의 효과

재정지원의 경우 조세지원과 다르게 각 부처에서의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R&D 재정지원의 효과는 정책 대상 및 지역,

재정지원의 경우 조세지원과 다르게 각 부처에서의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R&D 재정지원의 효과는 정책 대상 및 지역, 정책 수단, 지원 정책 시차 등에 따라 다소 혼재된 분석 결과를 보인다.

조세지원의 효과는 단순히 직접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와 기술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 수단, 지원 정책 시차 등에 따라 다소 혼재된 분석 결과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R&D 재정지원은 연구개발비 지출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경영성과나 기술혁신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R&D 재정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승환·장필성(2019)은 정부 R&D 지원사업의 수혜기업과 유사한 비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여부에 따른 연구개발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수혜기업의 매출 증대와 자체 연구개발비 투자 유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였다. 이아리·이사영(2022)은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보조금이 연구개발 투자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기의 정부 보조금이 당기의 기업 R&D 투자를 증대시키며, 전기의 정부보조금도 당기의 기업 R&D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보였다. 반면에, 장우현·방세훈(2020) 및 장우현(2021)은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재정지원 후 연구개발비의 증분이 낮아지는 것을 보였다. 수혜기업은 수혜 이후 1년간 1,654만원 가량 적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R&D 재정지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나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혼재된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권정호·이민규(2020)의 경우,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구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혁신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장우현·방세훈(2020) 및 장우현(2021)은 정책금융은 재정지원 후 지원기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박관수 외(2022)는 정부 보조금지원과 기업의 효율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2년차까지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효율성 제고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벤처기업의 경우, 장기와 단기 모두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벤처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만, 중소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보였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여러 간접적 정부 재정지원의 중복으로 인하여 직접지원인 정부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소결

요약하자면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원의 효과는 단순히 직접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뿐만 아니라 경

영성과와 기술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R&D 재정지원 역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경영성과나 기술혁신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세제 혜택이 변화할 경우 R&D 투자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에서는 각국의 국내세법에 반영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모델법안을 2021년 10월에 공개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2022년 3월에 공개하였다.

다. 글로벌 최저한세

1) 제도 개요

최근 경제의 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양자 협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OECD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된 '세원잠식 및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모멘텀을 얻었다. 이후 G20 및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논의에 공감을 가지고 총 138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포괄적 이행체계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두 가지 축(pillars)를 제안한다. 첫 번째 축(Pillar 1, 통합접근법)은 다국적기업 이익의 일부를 물리적 사업장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사전적으로 정한 공식을 적용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그 차이에 대해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축인 통합접근법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운영중인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에 대한 철폐 및 통합의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도의 구체화와 시행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두 번째 축인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EU·영국·일본 등)이 도입하기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몇 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에서는 각국의 국내세법에 반영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모델법안을 2021년 10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별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에 부합하는 범세계적으로 합의된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에 공개하였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2022년 3월에 공개하였다. 해당 모델법안과 주석서를 기반으로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법령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선제적으로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5장(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을 신설하였다.

<표 9>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와 연계된 법령에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통칙을 「국조법」 §60~65에 신설하였다. 「국조법」 §60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국조법」 §61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 최종모기업 및 소유지분 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만약 해당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용례를 따르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적용 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및 납세지에 대한 범위도 「국조법」 §62~65에 규정하였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별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 목적에 부합하는 범세계적으로 합의된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표준과 추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의 정의·배분, 실효세율 및 국가별 추가세액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규정들을 「국조법」 §66~73에 신설하였다. 「국조법」 §66①~⑥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으며, 「국조법」 §67에서는 법인세의 조정사항에 대한 계산 방법을 규정하였다. 「국조법」 §68에서는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금액이 경정 등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규정하였다. 「국조법」 §69·70·71에서는 앞서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 등을 사용하여 국가별 실효세율과 국가별 추가세액 및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국조법」 §72·73에서는 추가세액의 과세할 때 적용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의 여러 특례사항들을 「국조법」 §74~82에 규정하였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될 때 신고 및 납부 절차 등에 대한 규정들을 「국조법」 §83·84에 신설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기존의 「국조법」 §87(종전의 §60)의

<표 9>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법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조항)
통칙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국조법」 §60~61)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 범위 설정(「국조법」 §62~65)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 규정(「국조법」 §66①·③)
	회계상 순손익 산정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규정(「국조법」 §66②)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원칙 규정(「국조법」 §66④~⑥)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 규정(「국조법」 §67)
	신고 후 조정 방법 규정(「국조법」 §68)
	실효세율의 계산 방법 규정(「국조법」 §69)
	추가세액의 계산 방법 규정(「국조법」 §70~71)
추가세액 과세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 §7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 §73)
특례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 §77)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 §76)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국조법」 §78)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적용 면제(「국조법」 §80)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국조법」 §81)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국조법」 §82)
신고 및 납부 등	글로벌 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의무 규정(「국조법」 §83)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방법 규정(「국조법」 §84)
	결정 경정 통지 및 징수 방법 규정(「국조법」 §85)
	질문 조사 대상 규정(「국조법」 §86)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국조법」 §87)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이다. 먼저, GloBE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실효세율의 기준을 제시한다.

대상을 확대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정보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022년 말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법이 신설 및 개정이 되었을 때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23년 세법개정안에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2025년 또는 그 이후에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국의 입장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이다. 먼저, GloBE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실효세율의 기준을 제시한다. GloBE 규칙의 적용 대상(「국조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 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GloBE 규칙(「국조법」 제69조)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과 조정된 대상조세가 계산되면, 식(1)과 같이 각 관할국의 실효세율을 산출한다.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이며,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GloBE 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GloBE 규칙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업의 소득(결손)을 의미하며, 다국적기업 그룹 내 구성 기업별로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 비용의 가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산출한다.[7)]

또한, GloBE 규칙에 의거하여 조정된 대상조세를 계산하는데, 이는 각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GloBE 규칙에 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율(15%)와 비교하기 위한 분자 항목이다. 조정 대상조세의 계산은 「국조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해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Qualified Transferable Tax Credit) 등을 가산하고,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Non-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및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Non-Qualified Transferable Tax Credit),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8)]

이렇게 GloBE 규칙(「국조법」 제69조)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과 조정된 대상조세가 계산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각 관할국의 실효세율을 산출한다. 이때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과 결손의 합의 0과 같거나 작은 경우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은 계산하지 않는다.[9)]

$$\frac{\Sigma \text{ 각 구성기업의 조정된 대상 조세}}{\Sigma \text{ 각 구성기업의 } GloBE \text{ 소득} - \Sigma \text{ 각 구성기업의 } GloBE \text{ 결손}} \quad \text{식(1)}$$

식(1)에 의해서 관할국별 GloBE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세액에 대한 계산식(「국조법」 제70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text{순 } GloBE \text{ 이익} - \text{실질기반 소득 제외}) \times (15\% - \text{관할국 실효세율}) \\ &+ (\text{가산되는 당기 추가세액}) - (\text{최저한세})\end{aligned} \quad \text{식(2)}$$

여기서 실질기반 소득 제외 항목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5%와 급여비용 5%를

7) GloBE 규칙(「국조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주된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도관기업과 주주 사이에 손익을 배분한다.

8) 조정된 대상조세의 경우에도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의 경우와 같이 구성기업 간 분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조법 시행령 제111조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9)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무국적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별로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보아 GloBE 실효세율을 계산함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도입 초기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 연도에는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와 급여비용의 10%를 공제하되 첫 5년간은 연 0.2%씩 감소하고, 다음 5년간 유형자산은 연 0.4%씩, 급여는 연 0.8%씩 감소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산출된 추가세액(AT)은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국조법」 제72조), 소득산입보완규칙(또는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국조법」 제73조) 등에 따라 최종모기업 소재지국 및 타 관할국에 납부해야 한다. 2024년의 경우,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서 제출,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 18개월 이내로 설정하였고, 2025년 이후부터 15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하여 저자가 생각하는 주요한 쟁점사항은 조세지원 혜택의 효과성 저하와 해당기업들에 대한 부담세액 대비 낮은 수준의 세수 유입 가능성이다.

2) 쟁점사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하여 저자가 생각하는 주요한 쟁점사항은 조세지원 혜택의 효과성 저하와 해당기업들에 대한 부담세액 대비 낮은 수준의 세수 유입 가능성이다. 아래에서는 각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룬다.

가. 조세지원 혜택의 효과성 저하

GloBE 규칙에 따른 조정된 대상조세는 결손금 관련 소득공제와 적격으로 판단된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가산을 하게 되어있다. 이때 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세액공제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국내법상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OECD에서 2022년 3월에 공개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석서(Commentary)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4쪽의 원문 참조).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 후 4년 이내에 환급 가능해야 하고, 여기서의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기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제 혜택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화가 가능한 수준의 혜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0)]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OECD 주석서에서 제시된 수준의 환급가능 혜택이 아닐뿐더러,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투자, 고용, R&D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가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조세 혜택이 비적격환급세액공제로 분류되거나 적어도 혜택받은 세액공제의 일부분이 비적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11)] 특히, 투자와

10) 우리나라에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가 있다.

1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주요 세액공제 조세특례에서는 세제혜택을 다른 기업에 이전(transfer)할 수 없기에 적격이전가능세액공제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다.

GloBE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 기업이 국가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Article 10.1 Defined Terms -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134~138)

135. In order to be treated as a Qualified Refundable Tax Credit under the GloBE Rules, the tax credit regime must be designed in a way so that a credit becomes ① **refundable within 4 years** from when the conditions under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granting the credit are met. ② **Refundable means that the amount of the credit that has not been applied already to reduce Covered Taxes is either payable as cash or cash equivalent.** For this purpose, cash equivalent includes checks, short-term government debt instruments, and anything else treated as a cash equivalent under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used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as the ability to use the credit to discharge liabilities other than a Covered Tax liability. ③ **If the credit is only available to reduce Covered Taxes, i.e. it cannot be refunded in cash or credited against another tax, it is not refundable for this purpose.** If the tax credit regime provides for an election by the taxpayer to receive the credit in a manner that is refundable, the tax credit regime is considered refundable to the extent of the refundable portion, regardless of whether any particular taxpayer elects refundability.

출처: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Commentary to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2022.

고용의 경우 앞서 추가세액 산출 시 실질기반 소득제외 항목에서 일부 간접적으로 인정(유형자산 장부가액 5%, 급여비용 5%)이 되지만, R&D 투자는 해당 항목과 무관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12]

나. 국내 대상기업의 예상 부담세액 대비 낮은 세수 유입의 가능성

추가세액 계산식((식(2))에서 살펴보면 각 관할국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15%가 충족되도록 미달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최저한세액을 차감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기존의 저세율국이 최저한세 도입 및 최저한세율을 상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세율국이 최저한세를 도입하거나 최저한세율을 상향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이 늘어나지만, 해당 금액이 모기업 소재지국으로 가기 전에 관할국에서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 중심의 다국적기업인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금의 일부는 각 관할국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13]

12) R&D 투자의 재분배가 일어날 뿐 전반적인 R&D 투자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의 핵심 연구소가 우리나라와 미국에 위치하고, 비적격세액공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제 혜택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큰 규모로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부담이 증가해 투자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13) 총세입 관점에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세수 유입이 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추가적 세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예측된다.

3) 대상 기업 현황

글로벌 최저한세와 우리나라 세법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이 존재하지만 만약 실질적으로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없다면 이러한 염려는 노파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반면 GloBE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이들 기업이 국가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소절에서는 기업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GloBE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요건인 매출액 기준과 실효세율 기준을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해보고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들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다. 상장사로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매출액 기준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전 4개년 사이에 2개년 이상 매출액이 1조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 상장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4] 상장사협의회의 TS2000 데이터베이스에서 2018~2022년 KOSPI와 KOSDAQ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액, 연구개발비, 법인세차감전이익, 법인세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2018~2021년의 4개년 자료를 사용해서 2022년 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0>은 2022년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을 나누어 주요 재무정보를 살펴보았다. 전체 표본 2,356개사 중 대상기업은 192개사로 약 8.15% 수준이었으나, 매출액, R&D 투자, 법인세차감전손익이 비대상기업의 평균에 비해

<표 10>은 2022년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을 나누어 주요 재무정보를 살펴보았다.

<표 10>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대상기업과 비대상기업의 재무정보

(단위: 개, 백만원)

2022년 기준		대상기업	비대상기업	전체
기업 수		192	2,164	2,356
매출액	평균	7,199,795	174,975	747,456
	중간값	2,432,273	72,572	87,322
	표준편차	18,072,263	355,511	5,504,599
R&D 투자	평균	205,446	3,059	19,552
	중간값	2,557	524	539
	표준편차	1,548,067	8,498	444,410
법인세 차감 전 손익	평균	334,891	9,867	36,354
	중간값	120,305	3,343	4,170
	표준편차	3,472,121	56,970	994,310

출처: 상장사협의회의 TS2000 데이터베이스 바탕으로 저자 작성

14) 물론 부영그룹, SPC그룹, 이랜드그룹 등 일부 기업들은 해당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장기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속한 기업((2), (3))에 비해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1)이 매출액과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을 나누는 글로벌 최저한세 요건에 의해 기업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과 이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1>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기준을 만족한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중 실효세율의 구간에 따른 재무 정보를 살펴보았다. (1)~(3)열은 앞서 <표 10>에서 살펴본 192개의 대상기업을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나누어 재무정보를 살펴보았다. 실효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손익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실효세율 구간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의 기준인 15%와 「조특법」상 최저한세 최고 누진세율인 17%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었다.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속한 기업((2), (3))에 비해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1)이 매출액과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균 기준 매출액의 경우에는 약 4.5배까지,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약 8.8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법인세차감전손익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존재하고 이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라도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재무 정보를 (4)열에 정리하였다. (1)열의 65개 기업 중 약 절반인 32개 기업이 양(+)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을 발생시켰으며, 이들의 평균적인 R&D 투자는 7,804억원 수준이었다. 이를 합계로 살펴보

<표 11>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대상기업의 실효세율 구간에 따른 재무정보

(단위: 개, 백만원)

2022년 기준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1)	(2)	(3)	(4)[1]
		$ETR < 15\%$	$15\% \leq ETR < 17\%$	$17\% \leq ETR$	$ETR < 15\%$
기업 수		65	5	122	32
매출액	평균	9,256,601	2,057,624	6,314,700	12,585,993
	중간값	2,834,274	1,937,469	2,334,522	2,906,619
	표준편차	28,230,769	405,442	9,478,977	38,314,597
R&D 투자	평균	416,015	47,170	99,744	780,407
	중간값	4,230	2,886	2,059	4,843
	표준편차	2,607,219	64,093	388,904	3,702,193
법인세 차감전손익	평균	85,536	268,084	470,482	1,625,795
	중간값	-6,258	218,274	157,123	180,657
	표준편차	5,899,424	206,864	753,732	5,457,417

주: 1) (1)에 속한 기업에서 법인세차감전손익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기업을 제외함
출처: 상장사협의회의 TS2000 데이터베이스 바탕으로 저자 작성

면, 24조 9,730억원(=32×780,407백만원)으로 2022년 표본의 총 R&D 투자금액인 46조 64억원(=2,356×19,552백만원) 대비 약 54.21%(=24조 9,730억원/46조 64억원) 수준으로 영향받는 기업의 수는 적지만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Aghion & Howitt (1992; 2008)의 품질 기반 내생적 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바탕으로 국내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에 도입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해보고자 한다.

Ⅲ. 모형 및 시뮬레이션

1. 내생적 성장이론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모형은 Aghion & Howitt (1992; 2008), 하준경 (2017; 2018) 등에서 제시한 Schumpeterian 경제모형에 기반하고 있다.[15] Schumpeterian 모형은 Jo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논의를 반영한 내생적 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의미하며, 현실의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R&D 투자와 혁신을 통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는 현상을 반영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 새로운 판로개척,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기업을 앞질러 특별이윤을 획득하게 되는 '창조적 파괴'가 R&D를 통해 발생하며, 이를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유인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Aghion & Howitt (1992; 2008)의 품질 기반 내생적 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을 바탕으로 국내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해보고자 한다.

가. 기본 가정 및 생산

시간 t가 연속적(continuous)이고, 위험 중립(risk-neutral)의 선호를 가진 개인이 L만큼 존재하는 경제를 생각해보자. 모형 내 개인과 기업은 근시안적이며 이들의 시간선호율은 편의상 r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각 개인은 단위 시간당 한 단위의 노동을 부여받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대 소비(expected consumption)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

15) 해당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활용에 대해서는 Aghion(2004), Acemoglu, Aghion, Bursztyn & Hemous(2012), Aghion, Akcigit & Howitt (2015), 김병우(2020) 등을 참고하길 바란다.

R&D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술혁신이 발생한 경우, 기술 투자에 성공한 중간재 생산자는 보다 향상된 품질의 중간재를 생산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재 독점 생산자는 기술 혁신을 보인 새로운 중간재 생산자로 대체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시간 t의 최종재 Y_t는 중간재 y_t를 사용하여 경쟁적으로(competitively) 생산이 된다. 최종재 Y_t에 대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함수 형태로 가정한다.

$$Y_t = (A_t L)^{1-\alpha} y_t^{\alpha} \qquad \text{식(3)}$$

여기서 α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A_t는 현재의 중간재를 사용할 때의 생산성이다. 매 기간 중간재의 투입은 투입된 자본(K_t)과 동일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y_t = K_t$).

나. 기술혁신

R&D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술혁신이 발생한 경우, 기술 투자에 성공한 중간재 생산자는 보다 향상된 품질의 중간재를 생산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재 독점 생산자는 기술 혁신을 보인 새로운 중간재 생산자로 대체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중간재의 품질 향상은 결국 최종재 생산에 대하여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_t = \begin{cases} \gamma A_{t-dt} & \text{if 연구개발 성공} \\ A_{t-dt} & \text{if 연구개발 실패} \end{cases} \qquad \text{식(4)}$$

여기서 γ는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이는 연구개발 성공 시 전 시점 대비 향상된 생산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는 성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연구개발이 성공할 확률 z_t는 포아송(Poisson) 분포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기술혁신의 속도(arrival rate)는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 λ와 R&D 투자 금액(집약도) $n_t = R_t / \gamma A_{t-dt}$에 비례($\lambda n_t$)한다고 가정한다. 즉, 시점 t와 $t+dt$ 사이에 n_t의 R&D 투자가 투입될 때, 기술혁신이 발생할 확률은 $\lambda n_t dt$이며, 이러한 성공 확률은 시점 t의 생산성 수준 A_t이 높을수록(기술이 진보한 상태일수록) 낮아지는 관계를 암시한다.[16)]

16) Kortum(1997)

1) 중간재 생산자의 기업 가치

시점 $t+dt$의 현존하는 기업의 가치(V_{t+dt})는 시점 t와 $t+dt$사이에 $\Pi_t dt$만큼의 이익을 수득하였을 것이며, 이때 창조적 파괴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기업에게 대체되거나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명할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점 $t+dt$의 현존하는 기업의 가치(V_{t+dt})는 시점 t와 $t+dt$사이에 $\Pi_t dt$만큼의 이익을 수득하였을 것이며, 이때 창조적 파괴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기업에게 대체되거나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명할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V_{t+dt} = \Pi_t dt + (1-rdt)\begin{bmatrix} \lambda n_t dt \times 0 \\ (1-\lambda n_t dt) \times V_t \end{bmatrix} \quad \text{식(5)}$$

식(5)를 dt로 나누고 dt를 0으로 보내면 다음의 Bellman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r V_t = \Pi_t - \lambda n_t V_t \quad \text{식(6)}$$

결과적으로 식(6)은 V_t를 투자해서 이자율 r에 해당하는 수익과 해당 투자를 통해 생산성 증가를 통한 소득과 추후 다른 혁신기업에 의해 대체되어 발생하는 기대자본 손실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Schumpeterian 모형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재정거래 방정식(research arbitrage equation)이다.

식(6)을 V_t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_t = \frac{\Pi_t}{r+\lambda n_t} \quad \text{식(7)}$$

식(7)에서 기업의 가치는 현재 기술을 통한 수익의 현금흐름을 통상적인 이자율에 창조적 파괴에 의해 대체될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R&D 투자액에 비례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수입에 따른 법인세와 최저한세를 고려한다면, 세후 수익 Π_t는 이는 세전 소득 π_t에서 납부할 법인세를 차감한 값이 될 것이다.

$$V_t = \frac{\pi_t - \max\{\tau_{\min}\pi_t, \tau\pi_t - \tau_{tc} n_t\}}{r+\lambda n_t} \quad \text{식(8)}$$

R&D 투자 수준 n_t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R&D에 대한 보조금이 투자 수준에 대해 ψ의 비율로 지원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R&D 투자에 대한 한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tau_{\min}$과 τ는 최저한세율과 법인세율을 의미하며, τ_{tc}는 R&D 지출액(n_t)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max\{\tau_{\min}\pi_t, \tau\pi_t - \tau_{tc}n_t\}$는 현행 법인세 제도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저한세보다 커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R&D 투자 수준 설정[17]

R&D 투자 수준 n_t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R&D에 대한 보조금이 투자 수준에 대해 ψ의 비율로 지원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R&D 투자에 대한 한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frac{d(1-\psi)n_t}{dn_t} = 1-\psi \qquad \text{식(9)}$$

이때 혁신기업이 R&D 투자를 1단위 늘릴 때 얻는 한계편익은 λV_t가 될 것이다.

$$\frac{d\lambda n_t V_t}{dn_t} = \lambda V_t \qquad \text{식(10)}$$

식(9)와 식(10)을 일치시키고 식(8)을 대입하면 다음 식(11)과 같은 관계식을 얻는다.

$$1-\psi = \lambda\frac{\pi_t - \max\{\tau_{\min}\pi_t, \tau\pi_t - \tau_{tc}n_t\}}{r+\lambda n_t} \qquad \text{식(11)}$$

위의 식(11)을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라 나누고 R&D 투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고려하면 식(12)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n_t = \begin{cases} \max\left\{0, \dfrac{(1-\tau)\pi_t}{1-\psi-\tau_{tc}} - \dfrac{r}{\lambda}\dfrac{1-\psi}{1-\psi-\tau_{tc}}\right\} & \text{if} \quad \tau\pi_t - \tau_{tc}n_t > \tau_{\min}\pi_t \quad \text{식(12)} \\ \max\left\{\dfrac{(\tau-\tau_{\min})\pi_t}{\tau_{tc}}, \dfrac{(1-\tau_{\min})\pi_t}{1-\psi} - \dfrac{r}{\lambda}\right\} & \text{if} \quad \tau\pi_t - \tau_{tc}n_t \le \tau_{\min}\pi_t \quad \text{식(13)} \end{cases}$$

식(12)는 R&D 투자 세액공제 이후에 납부할 법인세가 최저한세 기준보다 높

17) 하준경(2018)을 바탕으로 본고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함

은 경우이며, 식(13)은 세액공제를 고려할 때 납부할 법인세가 최저한세에 못 미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최저한세와 동일해지는 경우이다. 식(12)의 조건을 R&D 투자에 대해 정리해보면 $n_t < (\tau - \tau_{\min})\pi_t/\tau_{tc}$가 되며, 일반적으로 R&D 투자 n_t이 현 법인세 체계에서 세전 수익 π_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이며, 반대로 식(13)의 조건은 R&D 투자가 세전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식(12)와 식(13)을 통합하면 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다음 소절의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한다.

$$n_t = \max\left\{0, \min\left\{\frac{(1-\tau)\pi_t}{1-\psi-\tau_{tc}} - \frac{r}{\lambda}\frac{1-\psi}{1-\psi-\tau_{tc}}, \max\left\{\frac{(\tau-\tau_{\min})\pi_t}{\tau_{tc}}, \frac{(1-\tau_{\min})\pi_t}{1-\psi} - \frac{r}{\lambda}\right\}\right\}\right\} \quad \text{식(14)}$$

이번 소절에서는 앞서 도출된 R&D 투자식(식(14))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원 수준에 대해 추정한다.

2. 글로벌 최저한세와 R&D

가. 글로벌 최저한세가 R&D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최저한세가 R&D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기 위해 파라미터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자율 r은 2022년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참고하여 3.25%로 설정하였다. 재정 지원율 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2022년에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총 R&D 재원에서 정부·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활용하였다. λ의 경우 R&D 투자의 생산성으로 일부 연구(김병우(2020) 등)에서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의 경우 최저한세율 변화에 따른 비율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에 Ha(2015) 등의 연구와 같이 편의상 0.5로 설정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군이 요건 설정에 따라 다소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한 '대상기업1'과 매출액과 실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이익)

식(14)를 사용해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었을 때를 유효최저한세율이 15%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을 고려한 '대상기업2'의 경우를 고려하였다. 수치의 극단값에서 오는 왜곡을 고려하여 각 경우마다 중앙값을 고려하였다. π_1은 '대상기업1'의 법인세차감전이익의 중앙값으로 이를 바탕으로, 누진적 법인세율을 적용한 유효법인세율 τ_1과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tau_{1,\min}$을 산출하였다. '대상기업1'에 적용되는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에서 π_1의 범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가진 분위의 기업당 세액공제 평균 금액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α_1은 식(14)에서 R&D 투자액 n_t가 재무 정보에서 살펴본 '대상기업1'의 R&D 투자 중앙값을 가지게 하는 계수로 일종의 표준화 또는 스케일 팩터(scale factor)이다. 즉, $\pi_t = \pi_1/\alpha_1$의 형태로 식(14)에 설정하고 n_t가 현재상태의 R&D 투자의 중앙값을 도출하는 계수이다.

<표 12>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구분		Benchmark	근거
공통	r	0.0325	2022년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1]
	ψ	0.234	총R&D 재원에서 정부·공공이 차지하는 비율[2]
	λ	0.5	Ha(2015)
대상기업1	π_1	120,305	법인세차감전이익(백만원)의 중앙값
	τ_1	0.172	π_1을 과세표준으로 고려 시 유효법인세율[3]
	$\tau_{1,\min}$	0.127	π_1을 과세표준으로 고려 시 유효최저한세율[4]
	$\tau_{1,tc}$	0.134	R&D 투자의 중앙값/세액공제 금액 평균값[5]
	α_1	53.61	R&D 투자의 중앙값을 만족하는 계수 추정값
대상기업2	π_2	180,657	법인세차감전이익(백만원)의 중앙값
	τ_2	0.198	π_2를 과세표준으로 고려 시 유효법인세율[3]
	$\tau_{2,\min}$	0.141	π_2를 과세표준으로 고려 시 유효최저한세율[4]
	$\tau_{2,tc}$	0.071	R&D 투자의 중앙값/세액공제 금액 평균값[5]
	α_2	41.83	R&D 투자의 중앙값을 만족하는 계수 추정값

주: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금리 추이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정부·공공 비중
3) 법인세법 제55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5)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식(14)를 사용해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었을 때를 유효최저한세율이 15%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대상기업1'은 기업별로 R&D 투자가 25억 5,800만원 수준에서 24억 6,100만원 수준으로 약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퍼센트로 계산해보면 약 3.79%의 R&D 투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기업2'에 속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48억 4,300만원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었을 때 47억 9,2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약 1.05%의 R&D 투자 감소가 예상된다.

<표 13>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예상되는 기업별 R&D 투자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대상기업1	대상기업2
Data(D)	2,557	4,843
Benchmark(B)	2,558	4,843
GloBE(G)	2,461	4,792
(G)-(B)	-97	-51
((G)-(B))/(B)	-3.79	-1.05

출처: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수치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에 대해 가늠해보기 위해 다른 여러 수치와 함께 살펴보았다.(<표 14> 참조) 먼저, '대상기업1'의 경우 3.79%의 R&D 투자 감소가 기대되는데, 이를 표본 내 '대상기업1'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총R&D 투자에 적용하여 그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해보았다. '대상기업1'에 속하는 기업들의 총R&D 변화는 1조 4,949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총 민간 R&D지출 금액인 89조 4,213억원 대비 약 1.67% 수준이다. 또한, 총R&D 투자 감소 금액을 2022년도의 총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과 비교해보면 약 70.02%를 차지한다. '대상기업2'의 경우 1.05%의 R&D 투자 감소가 추정되

앞서 살펴본 수치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인지에 대해 가늠해보기 위해 다른 여러 수치와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대상기업1'의 경우 3.79%의 R&D 투자 감소가 기대되는데, 이를 표본 내 '대상기업1'에 속하는 모든 기업의 총R&D 투자에 적용하여 그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해보았다.

<표 14>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예상되는 R&D 투자 변화

(단위: 백만원, %)

구분	(1)	(2)	(3)	(4)
	대상기업1	대상기업2	대상기업1	대상기업2
변화율[1]	-3.79	-1.05	-3.98	-1.11
Scaling[2]	Y	Y	N	N
총R&D 투자 감소 금액[3]	1,494,913	262,217	1,567,972	277,201
총R&D 투자 변화율[4]	-1.67	-0.29	-1.75	-0.31
총세액공제 대비 비율[5]	49.14	12.28	73.44	12.98

주: 1) 유효최저한세가 15%으로 상향될 때 개별 기업의 R&D 투자 변화율
2) 식(14)에서 R&D 투자액 n_i가 재무 정보에서 확인한 R&D 투자 중앙값을 가지게 하는 스케일 팩터(scale factor) 적용 여부
3) 재무 정보 표본 내 해당 기업군의 R&D 투자 금액의 총합에 변화율을 곱한 값
4)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총민간 R&D지출 금액인 89조 4,213억원 대비 총R&D 투자 감소 금액
5) 2022년도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른 총 세액공제 금액 대비 비율

출처: 저자 작성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위의 R&D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R&D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될까?

었으며, 이에 따른 총감소 금액은 2,622억원 수준이며, 이를 민간 R&D 투자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0.29% 정도이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대비 약 12.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분석을 위해 스케일 팩터(scale factor) α를 사용하지 않고, π_t를 1로 설정한 결과도 (3)열과 (4)열에 정리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1)열과 (2)열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8)]

나. R&D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R&D 보조금 추정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단위의 R&D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R&D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될까?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양한 기존의 세제 혜택에 사실상 일부 조정을 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세 관련 조세정책을 수정하여 기존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 보조금의 수준을 조절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전의 R&D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R&D 보조금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R&D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15%로 변화하였을 때 R&D 투자가 최저한세율 변화 이전의 수준과 동일해지는 R&D 재정 보조금률 $\tilde{\psi}$를 식(14)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15>는 대상기업별 추가적으로 필요한 R&D 재정 보조금률을 정리하였다. 먼저 금액 단위를 조정한 '대상기업1'의 경우 초기값 23.4%의 보조금률에서 2%p가 상승한 25.4%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 '대상기업1'에 지원되었던 보조금 대비 8.5%의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기업2'의 경우, 동일 수준의 R&D 투자를 유지하기위해 24.2%의 보조금률이 추정되었으며, 이

<표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후 R&D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율 추정

(단위: %)

구분	(1)	(2)	(3)	(4)
	대상기업1	대상기업2	대상기업1	대상기업2
변화율	-3.79	-1.05	-3.98	-1.11
Scaling	Y	Y	N	N
ψ	23.40	23.40	23.40	23.40
$\tilde{\psi}$	25.40	24.20	25.42	24.20
$\tilde{\psi}/\psi$	1.085	1.034	1.086	1.034

출처: 저자 작성

18) 추가적으로 이자율의 값을 변화하거나 2021년의 자료값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결과와 질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는 기존 대비 약 1.034배의 보조금이 해당 기업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앞서의 다른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스케일 팩터(scale factor) α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3)열과 (4)열에 정리하였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OECD 주석서에서 인정하는 '적격세액공제'와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조세특례들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조세특례들이 적어도 일부분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격세액공제'로 간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R&D 투자와 관련된 항목은 부재해 기술발전을 통해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한적이지만 국내 재무자료와 Schumpeterian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들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을 하였다. 가정한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들의 R&D 투자는 약 1~4% 하락이 예상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특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재정지원의 취지와 국민정서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우회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19)]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 추정을 위해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 및 세액공제 등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개된 기업 재무정보만으로 법인세 및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부정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회계 계정과 세무 계정과의 차이로 인해 연구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연구비에 대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상장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R&D 투자와 관련된 항목은 부재해 기술발전을 통해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19)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다양한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같이 여러 규모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상생하는 재정사업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기업만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요건이 대부분 상장사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만 만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만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해당 요건을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 결과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기업의 영향은 보다 클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가정들은 실질적인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추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각국의 기술패권경쟁을 보면 가히 "소리없는 전쟁"이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기술이 가져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왔다. 여기에는 운도 일부 작용하였지만 미래지향적인 실천력을 가진 국민들의 의식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세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직면한 현 상황에도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권정호·이민규, 「서비스산업 정부지원이 기업의 혁신성과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순서화로짓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5(1), 2020, pp. 171~195.

김병우, 「슘페테리안 성장모형을 통한 한국경제 R&D 투자의 적정규모 추정」, 『비교경제연구』, 27.1, 2020, pp. 2~43.

김빛마로·윤성주, 「2021년 조세특례 심층평가(1)-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김학수·박기백·손원익·전영준, 「2018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II-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0) 한국경제, 「"수천억 토해낼 판" LG화학 쇼크…SK·한화도 '초비상'」, 검색일자: 2024. 2. 19

김한울·김은정,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11.

김형진·전봉걸,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대한 효과 분석」, 『산업혁신연구』, 36(4), 2020, pp. 29~54.

문진주·홍기용, 「바이오산업에서의 조세지원과 기술혁신」, 『세무회계연구』, 61, 2019, pp. 151~172.

박관수·리우위에·김성환, 「기술인증 및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경영성과를 개선시키는가?」, 『재무관리연구』, vol. 30, no.1, 2022, pp. 175~198

오승환·장필성, 「정부 R&D 지원이 제조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 『기술혁신학회지』, 23(5), 2009, pp. 941~966.

윤성주·노민선, 「2015년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II-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이아리·이사영, 「중국의 정부지원과 경영진의 인센티브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3(6), 2022, pp. 97~113.

임홍래·한동숙,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원종학·김진수,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기업별 자료를 사용한 분석」, 『산업경제연구』, 19(4), 2006, pp. 1653~1679.

장우현,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 방향」,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23, 2021.

장우현·방세훈,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최대승, 『R&D 조세지원제도 효과분석을 통한 일몰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하준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율의 적절성: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24.3, 2017, pp. 313~334.

_____,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의 유인효과 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혜택 배분에 대한 함의」, 『사회과학연구』, 25.1, 2018, pp. 237~256.

Acemoglu, Daron, et al. “The environment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American economic review,* 102.1, 2012, pp. 131~166.

Aghion, Philippe, "Growth and development: A Schumpeterian approach," *ANNALS OF ECONOMICS AND FINANCE*, 5, 2004, pp. 1~26.

Aghion, Philippe, and Peter Howitt.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60.2, 1992, pp. 323~351.

Aghion, Philippe, Ufuk Akcigit, and Peter Howitt, "Lessons from Schumpeterian growth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105.5, 2015, pp. 94~99.

Aghion, Philippe, and Peter W. Howitt, "The economics of growth," MIT press, 2008.

Ha, Joonkyung, "SME-Large Firm Relationships and SMEs' Investment: Hold-up and the Potential Role of Financial Sector through the Win-win Growth Index,"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18(3), 2015, pp. 51~66.

정책연구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이경영·최근호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양은주·윤영훈

01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홍용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정부는 2023년 현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등을 통해 기업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의 성격은 아니지만, 일부 규모가 큰 기업[1]이 투자, 임금 지출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듯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운용 중인 정부의 정책은 일정한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왜곡을 통해 효율성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지원의 성격을 갖는 제도의 경우 정부가 거두어들여야 할 세수입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제도 중 어떠한 제도가 더 효과적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조세지출 의무심층평가에서 개별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분석은 수행된 바 있으나 개별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제 특성상 기타 투자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이거나 과거 운용되었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1)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또한 기업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가 기업투자에 개입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서는 투자 관련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 기타 투자 관련 조세제도 등 가능한 다양한 제도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가. 기업투자 현황

본 소절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투자의 추이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투자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관련 제도 개편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설비투자계획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2020년 기간에 대체로 하락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하면서 법인 실적도 개선된 바 있는데 기업의 설비투자 추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021년 이후 투자가 반등한 패턴이 관측되었으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등폭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설비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업종별 패턴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7~2020년 기간 동안 제조업 전체적으로 투자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반도체와 식료품 업종의 투자금액은 증가하였다. 반면 2020~2022년 기간에는 2017~2020년 기간 동안 부진하였던 석유정제, 화학제품 업종의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2020~2022년 기간에는 대부분 비제조업종의 투자금액이 증가하였으나 통신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투자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자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외부자금의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내부자금 비중은 69.4%, 외부자금 비중은 30.6%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설비투자에서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부자금 비중의 확대는 대부분 간접금융 비중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금융 및 신용지원 등으로 기업들의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제도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가속상각제도이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페널티 성격의 제도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투자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전에 다양한 특정목적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현황 및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 소개한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2)]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유인장치로 1968년 도입되었으며 2011년 일몰 종료되었다. 2011년 기준 대상 자산은 제조업 등 32개 사업용 자산이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중고품에 대한 투자,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단, 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대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경우는 포함되었다.

2) 가속상각제도

가속상각제도는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여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간접적 조세지원 정책을 의미한다. 즉 내용연수 초반에 이익을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법인세 이연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속상각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이다.

3)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및 임금증가, 배당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인에 대해 추가 과세함으로써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의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의 형태로 환류된 금액이 해당 기업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며, 기업은 '투자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를 포함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금액의 합계가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α) 이상이어야 추가 과세되지 않으며, 투자를 제외하는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금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β) 이상이어야 추가 과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 현재 α는 70%, β는 15%로 설정되어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다.

다. 제도 활용 추이 및 현황

1)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지출예산서

본 소절에서는 국세통계연보,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활용 추

2)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이 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소개하였으며, 기타 다양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를 총량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4개 분류기준을 따라 각 항목의 조세지출 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조세지출실적 중 '투자촉진'으로 분류된 제도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비중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혜택 수준이 대체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2020년부터는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투자자산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기타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투자지원 관련 조세지출실적 및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예산서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투자 관련 제도를 식별하여 모두 포함한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추이가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국세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제도 활용 추이를 검토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순서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 제도는 일반 사업용 자산에까지 폭넓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2) 국세청 미시자료[3)]

본 소절에서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해 개별기업 단위에서 제도별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먼저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첫해에 제도를 활용한 기업들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 중 일반기업의 비중(12.7%)은 해당 연도에 무작위 추출된 전체 기업 중 일반기업의 비중(15.7%)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020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더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정목적 시설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의 세 가지 기업 규모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투자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점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적용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효과성 분석에서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 다양한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존재하여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지출해야 했던 비용의 감소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제도의 단순화가 효과적이었다면 기존에 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복잡하게 적용해야 했던 기업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기업과 비전환기업 간에 직전 연도 투자세액공제 이용 개수는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며, 오히려 비전환기업이 2019년에 더 적은 수의 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업종의 특성상 기존 특정목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던 기업들의 투자를 유

3) 본 소절의 결과 해석에는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분석에 활용된 국세청 미시자료의 특징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도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통합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업종별로 다른 기업의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보다는 더 세밀한 기업의 경영 및 투자결정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세청 미시자료를 통해 파악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고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포함형'과 '투자 미포함형' 중 투자 미포함형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업태별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고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순으로, 서비스업 중에서는 '법무, 회계, 건축 및 상담업', 'IT관련 및 연구개발업',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순으로 제도 적용 기업이 많았다.

3. 기업투자 결정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업투자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연구자의 관심 대상이었다. 여기에서는 기업투자와 법인세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투자 의사결정 모형 중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하는 Hayashi(1982)의 조세조정 모형을 이산시간모형(discrete time model)으로 변형하여 소개하였다.

가. 기업투자 의사결정 모형

기업은 매 순간 자본의 수준과 추가적인 투자를 조절하여 현재의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점의 기업 가치(V_t)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식(1)과 제약조건의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_t = \max_{\{I_{t+s},K_{t+s}\}_{s=0}^{\infty}} E_t\left\{\sum_{s=0}^{\infty}\beta_{ts}\left[\begin{matrix}(1-\tau_{t+s})(F(K_{t+s},x_{t+s})-\Psi(I_{t+s},K_{t+s}))\\ -(1-ITC_{t+s}-\tau_{t+s}z_{t+s})I_{t+s}\end{matrix}\right]\right\} \quad \text{식(1)}$$

자본의 경제적 감가상각률(δ)을 고려한 자본 축적 규칙(capital accumulation rul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가진다.

$$K_{t+1} = (1-\delta)K_t + I_t \quad \text{식(2)}$$

여기서 I_t는 시점 t에서 시점 t+1 사이에 발생한 투자를 의미하며, K_t는 시점 t의 초기 자본수준을 나타낸다. E_t는 기댓값을 의미하는 연산자로 시점 t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기댓값을 의미한다. β_{ts}는 시점 t를 기준으로 기간 s만큼 미래 시점에 적용되는 실질 할인율을 의미하며, $\beta_{t0}=1$과 $\beta_{tj}=\beta_{t,1}\beta_{t+1,1}\cdots\beta_{t+j-1,1}$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τ_t는 시점 t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F(K,x)$는 기업의 생산함수를 의미하고, x는 확률적 생산성(stochastic productivity)을 나타낸다. ITC_t는 시점 t에 발생한 투자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investment tax credit)을 의미한다. z_t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률(depreciation

allowances)이다. $\Psi(I,K)$는 투자조정비용함수로 Lucas(1967) 및 다른 연구에 따라서 일반적인 이차식과 선형 동차의 특성을 가지고 조정비용 모수 ω를 포함하는 식 (3)의 형태로 가정한다.

$$\Psi(I_t,K_t)=\frac{\omega}{2}\left(\frac{I_t}{K_t}\right)^2K_t \qquad \text{식(3)}$$

식(2)에 관한 라그랑주 승수항(Lagrangian multiplier)을 q_t라 하면, I_t와 K_{t+1}에 대한 기업 가치 최대화 문제의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s)을 식(4)와 식(5)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의 라그랑주 승수항인 q_t를 일반적으로 토빈의 한계적 q라고 말한다.

$$q_t=1-ITC_t-\tau_t z_t+(1-\tau_t)\omega\frac{I_t}{K_t} \qquad \text{식(4)}$$

$$q_t=E_t\left\{\beta_{t1}\left[(1-\tau_{t+1})\left(\frac{\partial F(K_{t+1},x_{t+1})}{\partial K_{t+1}}+\frac{\omega}{2}K_{t+1}\left(\frac{I_{t+1}}{K_{t+1}}\right)^2\right)+(1-\delta)q_{t+1}\right]\right\} \qquad \text{식(5)}$$

이때 자산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t시점의 기업 가치는 t시점의 주식가격(P_t)과 동일 시점의 배당(D_t)으로 표현할 수 있다.

$$V_t=P_t+D_t \qquad \text{식(6)}$$

여기서 t시점의 배당은 아래와 같이 해당 시점에 순이익으로 표현할 수 있다.

$$D_t=(1-\tau_t)\left(F(K_t,x_t)-\Psi(I_t,K_t)\right)-(1-ITC_t-\tau_t z_t)I_t \qquad \text{식(7)}$$

식(1)을 식(2)에 대한 라그랑주 승수항을 활용하여 변형한 후, 식(3)과 식(4)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관계식을 얻는다.

$$V_t=E_t\left\{\sum_{s=0}^{\infty}\beta_{ts}\left[\begin{array}{l}(1-\tau_{t+s})(F(K_{t+s},x_{t+s})\\ \quad+q_{t+s}[(1-\delta)K_{t+s}\\ -\frac{\omega}{2}\left(\frac{I_{t+s}}{K_{t+s}}\right)^2K_{t+s})\\ \quad-K_{t+s+1}]\end{array}\right]\right\} \qquad \text{식(8)}$$

규모에 대하여 보수가 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하다는 가정이 생산 기술과 투자의 조정비용에 성립한다면, 식(5)를 반복적으로 식(8)에 대입하여 아래와 같이 시점 t에만 의존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V_t=(1-\tau_t)\left((F(K_t,x_t)+\frac{\omega}{2}\left(\frac{I_t}{K_t}\right)^2K_t\right)+q_t(1-\delta)K_t \qquad \text{식(9)}$$

식(9)와 식(6) 및 식(7)을 정리하면 t시점의 주식가격은 한계적 q와 t+1 시점의 자본스톡과 동일해짐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P_t&=\left[1-ITC_t-\tau_t z_t+(1-\tau_t)\omega\frac{I_t}{K_t}\right]I_t+q_t(1-\delta)K_t\\&=q_t[I_t+(1-\delta)K_t]\\&=q_tK_{t+1}\end{aligned} \qquad \text{식(10)}$$

Hayashi(1982)에서 이러한 기업의 시장 가치 대비 장부가치를 평균적 $q(Q_t\equiv P_t/K_{t+1})$라고 정의하였으며, 위의 식(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계적 q와 평균적 q가 동일함($q_t=Q_t$)을 보였다.

나. 이론적 결과 및 함의

이번 소절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조세조정 토빈 q 모형을 통하여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증적 모형에 대해서 도출한다.

먼저 이론 모형을 통해 기업의 투자율은 투자세액공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세법에서 허용되는 감가상각률이 클수록 투자율이 증가하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① 실증적인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무엇인지 ② 해당 변수가 실증적 모형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③ 중점적으로 확인하려는 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표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론모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증적 모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frac{I_{i,t}}{K_{i,t}} = \alpha + \beta_Q \frac{Q_{i,t}}{1-\tau_{i,t}} + \beta_\Gamma \frac{1-\Gamma_{i,t}}{1-\tau_{i,t}} + \gamma' X_{i,t} + f_i + T_t + \epsilon_{i,t} \quad \text{식(11)}$$

여기서 $I_{i,t}/K_{i,t}$는 기업 i가 시점 t에서 보여주는 투자율을 의미한다. $Q_{i,t}$는 기업 i가 시점 t에서 가지는 평균적 q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시장 가치 대비 장부가치로 계산될 수 있다. $\Gamma_{i,t}$는 기업 i가 시점 t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세금 혜택이다. $X_{i,t}$는 통제변수, f_i는 기업고정효과를 나타내고, T_t는 시간고정효과를 의미한다. $\epsilon_{i,t}$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식(11)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적절한 세금 변수의 선택에 대해 논의한다.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통하여 추정된 법인세율이 가장 적합한 법인세율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세금 혜택 변수인 $(1-\Gamma_{i,t})/(1-\tau_{i,t})$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추정해야 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만약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와 관련된 세금혜택 제도의 통합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투자와 관련된 세금 혜택 변수를 아래와 같이 변형하여 고려할 수 있다.

$$\frac{1-\Gamma_{i,t}}{1-\tau_{i,t}} \approx 1 + tax_{i,t} \quad \text{식(12)}$$

여기서 $tax_{i,t}$는 기업 i가 시점 t에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액으로부터 계산된 실효세율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 투자세액공제 또는 감가상각제도의 개별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론적 $\tau_{i,t}$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통하여 추정된 법인세율을 사용하고 기업형태, 업종, 투자자산별로 해당 제도의 요건을 활용하고 개별적으로 $ITC_{i,t}$와 $z_{i,t}$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4.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검토

법인세 혹인 법인세 관련 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Edgerton(2010)은 조세지원에 대한 기업의 투

자반응을 기업별 현금흐름과 과세 상태(taxable status)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들의 자산 대비 현금흐름의 비중이 높을수록 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총(aggregate)현금흐름이 감소함으로써 가속상각제도의 효과성이 2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들이 과세 상태인 경우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Liu and Mao(2019)는 중국에서 2004년부터 도입된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기업의 투자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투자는 38.4%, 생산성은 8.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금융 제약에 직면한 기업에서 더욱 강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Ohrn(2019)은 미국의 연방정부의 가속상각제도의 주(state)별 도입의 변이(variation)를 활용하여 가속상각제도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가속상각제도는 기업의 자본투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Djankov et al.(2010)은 국가별 실효법인세율 데이터를 활용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투자와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실효법인세율을 10%p 인상하면 GDP 대비 총고정자본 형성은 2.2%p 감소, 외국인 직접 투자는 2.3%p 감소, 평균 신규사업자 등록률은 1.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질성 분석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조업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Zwick and Mahon(2017)은 미국의 가속상각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한시적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장비 투자(equipment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분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너스 감가상각은 2001~2004년 기간 기업의 투자를 평균 10.4%, 2008~2010년 기간 16.9%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질성 분석 결과, 중소·중견기업들이 투자 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affini et al.(2019)은 영국 가속상각제도의 초년도 공제(first-year capital allowances, FYAs) 기준의 외생적 변화가 중소 및 중견기업(SMEs)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YAs는 2004년 이후 새롭게 SME로 지정된 기업의 투자를 2.1%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 투자의 순비용에 대한 투자의 잠재적 탄력성은 약 8.3~9.9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기업의 투자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이철인(2020)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 2009년 제도 변화를 활용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2009년도 투자세액공제 인하의 결과 통제변수에 따라 9~13%의 투자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유형자산 중 기계류 관련 투자가 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만·박진하(2015)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의 고용수요 창출과 투자유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들은 동 제도가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분석자료

조세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려 가능한 자료는 기업재무자료와 과세자료가 있다.

먼저 대표적 기업재무자료인 한국평가데이터는 국내의 상용 재무자료 중 가장 많은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 표본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관련 특성 및 재무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본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세제도 외에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실증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세청 미시자료의 경우 가장 정확한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료 확보 및 활용에 제약이 존재한다. 조세제도 활용, 세부담과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기업재무자료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무 관련 정보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 기업들은 자신의 투자내역을 정확하게 국세청에 보고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료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 파트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를, 앞서 제시한 제도 활용 추이 및 현황 분석에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다. 분석 개요 및 실증분석 전략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투자 관련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제도 변화를 활용해 세액공제 방식의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과거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한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이다. 특히 2020년 투자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성격의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과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반응 정도의 차이를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을 이연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가속상각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로서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해외에서 다수 수행된 바 있으며, 많은 경우 가속상각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와 연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직접적으로 경감해 주는 세액공제 방식의 투자 조세지원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과세

이연의 효과를 가진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활용 유인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아니지만 세제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분석도 수행한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이다.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향후 정책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주요 변수 및 측정방법

여기에서는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제도, 기타 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기업투자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하게 고려되는 변수인 기업투자,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감가상각률 및 기타 통제변수를 정의 및 측정하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먼저 기업투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한다.

$$TA_{i,t} = \frac{\text{유형고정자산투자 증가액}_{i,t}}{\text{총자산}_{i,t-1}} = \frac{\text{유형고정자산}_{i,t} - \text{유형고정자산}_{i,t-1}}{\text{총자산}_{i,t-1}} + \frac{\text{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_{i,t}}{\text{총자산}_{i,t-1}} \quad \text{식(13)}$$

$TA_{i,t}$는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기업투자로 고려하는 유형고정자산투자이며, 시점 t-1부터 시점 t까지의 유형고정자산투자 증가액을 시점 t-1의 연말 총자산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로그 자본량 또는 그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도 고려하였다.

일반적인 법인세와 관련된 변수는 $\tau_{i,t}$와 $tax_{i,t}$를 고려하였다.

$$\tau_{i,t} = \frac{\text{법인세비용}_{i,t}}{\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_{i,t}}, \quad tax_{i,t} = \frac{\text{법인세납부액}_{i,t}}{\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_{i,t}} \quad \text{식(14)}$$

여기서 법인세비용$_{i,t}$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_{i,t}$는 기업 i의 시점 t에 발표한 손익계산서상 계정을 의미하며, 법인세납부액$_{i,t}$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세납부(환급)액을 의미한다.

기타 통제변수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q 이론과 관련된 변수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빈-q 변수를 실증적으로 활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석 대상 기업 대부분이 시장가치 평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정확한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빈-q 변수의 영향이 낮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금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Cash_{i,t} \text{ 또는 } \frac{Cash_{i,t}}{BA_{i,t}}, \quad CashFlow_{i,t} \text{ 또는 } \frac{CashFlow_{i,t}}{BA_{i,t}} \quad \text{식(15)}$$

$Cash_{i,t}$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CashFlow_{i,t}$는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감가상각비를 합한 값을 의미한다. $BA_{i,t}$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을 의미한다. 총자산 대비 현금 또는 현금흐름의 비율을 살펴보는 이유는 전체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내부 자금의 여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채비율 관련하여 다음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Lev_{i,t} \text{ 또는 } MarketLev_{i,t} \qquad \text{식(16)}$$

여기서 $Lev_{i,t}$는 재무상태표의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MarketLev_{i,t}$는 재무상태표의 총부채를 시장에서 평가된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 및 업력에 대한 변수, 신용제약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지수 등을 고려하였다.

2) 제도 변화 및 식별전략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본 소절에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총 세 개의 제도에 대한 주요 제도 변화 및 식별전략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09년의 정책 변화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7%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2009년 투자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는 10%의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었다. 즉, 비수도권 지역에는 투자 세액공제율이 증가하였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투자 세액공제율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처치군을 비수도권 기업, 대조군을 수도권 기업으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고려하였다.

$$\begin{aligned} y_{it} &= \alpha + \beta_1 TREAT_i + \beta_2 POST_t \\ &+ \beta_3 (TREAT_i \times POST_t) + \gamma' X_{it} + FE + \epsilon_{it} \end{aligned} \qquad \text{식(17)}$$

y_{it}는 기업투자 변수로서 TA_{it}(유형고정자산투자, 유량) 또는 K_{it}(유형고정자산, 저량)를 고려한다. $TREAT_i$는 처치군인 비수도권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기업의 경우 1의 값을 취하고, 그 이외의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POST_t$는 제도 변화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2009년과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취하고, 그 이전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진다. X_{it}는 관찰 가능한 기업 특성이다. y_{it}가 TA_{it}(유형고정자산투자, 유량)일 경우, X_{it}에 기업의 법인세율(τ), 현금흐름비율, 부채비율, 기업 규모, 업력을 포함하며, 부채비율과 기업 규모는 저량과 유량의 관계를 고려하여 1년의 시차를 두었다. y_{it}가 K_{it}(유형고정자산, 저량)인 경우에는 X_{it}에 기업의 법인세비용, 현금성 자산, 부채비율, 기업 규모, 업력을 포함하였다. FE는 여러 고정효과를 나타내며, 모형에 따라 지역, 산업, 기업, 연도 고정효과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패널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추세(time trends)를 통제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y_{it} = \alpha + \beta_1 TREAT_i + \beta_2 POST_t + \beta_3 (TREAT_i \times POST_t) + \gamma_1 \Delta t + \gamma_2 y_{it_0} + \gamma_3 (\Delta t \times y_{it_0}) + \gamma' X_{it} + FE + \epsilon_{it} \quad \text{식(18)}$$

여기서 Δt는 연도에 따라 증가하는 변수로 연도 t와 기준 초기 시점 t_0의 차이를 의미한다. 초기 시점은 분석상 가용한 자료의 가장 처음 시점으로, y_{it}가 TA_{it}(유형고정자산투자, 유량)일 경우, t_0는 2006년이고, y_{it}가 K_{it}(유형고정자산, 저량)인 경우 t_0는 2005년이다. y_{it_0}는 초기 시점의 기업투자를 나타낸다. $\Delta t \times y_{it}$는 초기 시점의 기업투자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교차항이다.

나. 가속상각제도

가속상각제도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형태의 분석을 활용하였다. 각 기업이 가속상각제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혜택의 규모는 제도의 시행 혹은 변동 시점 전후, 그리고 기업이 속한 주된 산업에 따른 가속상각의 혜택 규모의 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투자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가속상각제도의 효과성을 분리하여 추정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제도의 영향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가속상각제도의 특성이다. 가속상각제도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본고는 이에 더하여 가속상각제도의 개정과정에서 제도가 계속하여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간을 식별에 이용한다. 가속상각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최대 가감 허용부분이 변화하였으므로 투자한 시점에 따라 가속상각제도의 효력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속상각제도에 의하여 산업별 및 시기별로 달라지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z_{N,g,t}$)의 차이에 따라 투자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추정한다.

$$y_{it} = \alpha + \beta z_{N,g,t} + \gamma X_{it} + \delta_t + \psi_N + \epsilon_{it} \quad \text{식(19)}$$

y_{it}는 기업투자 변수로서 TA_{it} 그리고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고정자산만을 이용하여 TA_{it}를 재구성한 변수를 사용한다. $z_{N,g,t}$는 산업(N), 기업규모(g), 시기(t)에 의해 달라지는 1원의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X_{it}는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관련 변수, 현금, 부채비율, 업력, 그리고 총자산 등을 고려한다. δ_t는 연도고정효과, ψ_N는 산업고정효과를 의미하며, 일부 분석에서는 위 식에 기업고정효과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각 제도가 도입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2015 사업연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중소기업은 제외)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두 번째는 2018 사업연도부터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된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투자·고용·상생 관련 지출에 대한 유인이 확대되고 제도 적용 기업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처치군을 제도 적용 대상 기업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에 가까운 기업으로, 대조군은 제도 비적용 대상 기업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에 가까운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y = \alpha + \beta_1 TREAT_i + \beta_2 POST_t + \beta_3 (TREAT_i \times POST_t) + \gamma X_{it} + \delta_t + \lambda_i + \epsilon_{it} \quad \text{식(20)}$$

y_{it}는 기업투자 변수로서 $TA_{i,t}$와 로그 자본량 변화를 고려한다. $TREAT_i$는 처치군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POST_t$는 제도 변화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POST_t$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2015년 이후 1의 값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2018년 이후에 1의 값을 취한다.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최초 도입된 제도 변화의 경우, $POST_t$가 2016년 이후에 1의 값을 갖도록 하는 분석도 병행하였다. 제도 설계상, 도입 첫해에 미환류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환류필요 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최초 도입된 2015 사업연도에 제도 대상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추가 세액 납부를 이연하여 제도 도입 첫해의 추가과세 실적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X_{it}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의 관측 가능한 특성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관련 변수, 현금, 부채비율, 업력, WW 지수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λ_i는 기업고정효과, δ_t는 연도고정효과이다.

라. 실증분석 결과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와 일종의 페널티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제도는 기업투자에 대한 유의미한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수의 불균형이 완화된 매칭 표본에 대해 시간 추세 통제 결과를 기준으로 유형고정자산투자(총자산으로 표준화된 유량변수)의 경우, 정책 변화 이전인 2006~2008년 표본 대비 2009~ 2010년에서 평균적으로 1%p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유형고정자산의 저량적 변화의 경우 정책 변화에 의해 평균적으로 10%p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09년의 정책 변화의 효과만을 분석했으므로 이러한 효과가 다른 시점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23년 운영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해당 제도가 기업투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1원 투자의 감가상각분에 대한 현재가치를 뜻하는 $z_{N,g,t}$가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약 0.07~0.18,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투자의 경우 약 0.05~0.06가량의 유의한 값을 가지며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예상과 같이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결과 해석에 유의할 부분 역시 존재한다. 먼저 가속상각제도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일반적인 회계연도의 절반이 지난 후 변동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 단위로 기록된 재무정보를 통하여 제도 변화의 효과성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제도 변화를 충분히 예상할 시간이 주어졌으며 회계연도 내에서 투자의 집행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경우 동 기간에 변동된 제도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기준내용연수의 길이에 따라서 산업별로 서로 다른 비중으로 가속상각제도를 선택하여 혜택을 수혜하였는지 여부 등은 실제 가속상각제도 이용 여부 등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었을 때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검증해 보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분석 결과, 동 제도는 모든 제도 적용 기업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도 적용 기업들이 주로 '투자 제외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본 제도의 투자 증대 효과가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이미 특정 임계점을 초과하여 고용, 투자 등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설계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기업소득 대비 투자금액이 양극단에 있는 표본을 제외한 부분표본 분석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투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 준다. 즉 본 제도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일정 구간에 속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유의미하게 유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에서 더욱 명확하게 추정되었다. 다만 2018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여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부분표본으로 한정한 분석에서도 투자증대 효과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였다. 다만 분석 대상 제도 외 다른 제도들이 '처치군'과 '대조군'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추정 결과에 체계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정책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용 시기와 내용이 다른 제도의 실증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추정 결과를 정량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지양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들이 투자의 시기만을 조정하는 효과로 인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기업들이 투자 관련 조세제도가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투자의 시기를 조정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극대화할 유인을 갖게 된다. 다만 여러 차례 일몰 연장되면서 사실상 항구화되어 운용된 측면이 있는 제도의 경우 투자 시기만을 앞당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정책시사점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들이 기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기업투자에 대한 유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와 일종의 페널티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일부 한계점으로 인해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세 가지 제도 모두 적어도 특정 조건하에서는 기업투자를 유의미하게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조세정책적 수단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이 '투자유인'이라는 1차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제도들에 의해, 1차적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 영향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세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데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타 제도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본 제도는 필연적으로 기업 행태에 큰 왜곡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세액공제와 가속상각 방식의 경우 기업의 투자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세지원제도로서 일종의 가격 변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제도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더 적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투자에 대한 적절한 유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속상각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효율성 비용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긴 산업일수록 가속상각제도에 의한 투자유인을 강하게 받게 되는데 명백한 정책적, 경제적 이유가 수반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경제 내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제도 적용 대상 자산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업종 간 제도에 의한 혜택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을 별도로 규정하고 높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업종에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직접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지출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 모두 기업투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조세지출액이 발생하는 가속상각제도의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은 정책 변화 전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투자 증대 효과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각 제도가 항구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을 앞당기는지 아니면 두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된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만일 추후 분석에서 두 방식 모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조세지출액 측면을 고려할 때 가속상각제도의 보다 적극적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세 중립성과 조세지출액 관점에서 세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자의적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다. 반면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격 기제를 통해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비해 효율성 비용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투자자산을 넓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혜택 수준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가속상각제도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 비용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가속상각제도는 직접적 조세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 방식에 비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유인 조세제도는 투자세액공제 방식과 가속상각제도 방식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업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를 보다 단순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제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운용하고, 기업규모, 기술 종류 등에 따른 차등공제율 등 다양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 중견, 대기업에 대해 혜택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을 구분하여 각각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기존 특정목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제도가 상당 부분 단순화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

히 기업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함께 운용되고 있어 기업의 조세 혜택 쇼핑, 경제적 행태 왜곡 등이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납세협력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투자 관련 조세제도를 보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관련 조세제도가 1차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제도가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 등 기타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도입 이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이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데이터가 확보된 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 향후 정부의 정책설계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PF

---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2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2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 **이경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최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부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의 하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2005년 기준 전국 405개 공공기관 중 85%에 해당하는 34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며, 이 중 176개 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폐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153개 기관이 개별이전하거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나 일자리 증가율, 고용 증가율 등 경제적 측면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지역, 즉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해 이전 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현지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주민들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역을 이탈한다면 이는 정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곧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의 인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이 위치한 시·군·구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06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대상지역으로 삼은 것은 제주 서귀포시와 전북 완주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12개 시·군·구이다. 설문지는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역주민 사전인터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가 일관된 기준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응답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정주여건의 지역적 범위나 인식 수준의 범위 등을 해당 설문 앞에 반복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수집된 표본에 대해서는 지역 내 연령비율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통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와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주민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인식 수준이 혁신도시별, 또는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 혁신지구와 인접성에 따라, 또한 거주 시점을 기준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여 이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중점 개선영역을 도출하였다. 즉, 정주여건 중 주민의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의 인구 및 일자리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2년 대비 2022년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광주·전남, 충북, 강원, 경북 혁신도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대비 2022년의 지역 내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광주·전남, 충북, 경북, 강원 혁신도시 등이었다. 즉, 인구 증가율이나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비광역시 지역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에 기초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인구 및 일자리 증대 효과에 대한 인식은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 지역에 위치한 혁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 증대 효과에 대한 인식은 경북, 경남, 강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순으로, 일자리 증가 효과에 대한 인식은 경남, 경북, 광주·전남, 강원 혁신도시 순으로 각각 체감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기초통계자료의 경향성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인식은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인구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 정도는 혁신지구와 인접성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혁신도시의 개별 정주여건 중에서는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일자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혁신도시 규모별로 살펴보면, 주택 및 주거환경,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광역시 대비 비광역시 거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혁신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른 정주여건의 차이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는 상업시설 및 의료시설 등에서 원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주민의 경우 지역의 발전 정도가 낮았던 시기부터 거주하였기 때문에 만족 수준이 더 크게 체감되었을 수 있다. 넷째, 개별 정주여건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주택 및 주거환경, 일자리 여건, 의료시설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일자리 여건이 도출되었다. 혁신도시별로

도 부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 일자리 여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면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의지 증대에는 지역 안전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은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가령 상업시설은 비광역시 지역에서만 주민의 정주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입지 선정 시 지역의 발전 정도와 기관 간 균형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는 광역시보다는 비광역시에서, 지역 내에서는 혁신지구에 인접할수록 주민의 체감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대상지역 선정 및 지역 내 기관 배치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인재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체감 정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지역 인재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혹은 졸업 예정)한 인재'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의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지역 출생이나 지역 내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주민의 체감 정도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시와 비광역시 간에 우선순위를 달리하여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주민의 정주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광역시와 비광역시 지역 간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광역시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비광역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주여건 개선 시 상업시설의 개선 및 증대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접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용성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KIPF

---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17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3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 **양은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에서 국가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를 감사원 지적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미비점과 국가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오류발생 현황과 제도적 개선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발생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내용

우선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와 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현황을 살펴보았다. 감사원 지적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현황을 종합하면, 감사원 지적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유형 및 원인은 유사하며, 두 유형의 회계오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는 전반적으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국유재산과 관련된 오류로 파악되었다. 자산재평가, 자산누락 및 중복계상 오류가 전체 오류 중 큰 비중을 차지하여 현행 자산관리체계에서 회계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2021년 시행된 국유재산 재평가로 인해 예외적으로 큰 규모의 회계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재평가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총자산 대비 오류금액의 비중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국유재산 재평가 관련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오류는 모두 자산 대비 1%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회계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및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하여 국가결산시스템의 효과성과 반복적인 회

계오류의 발생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환보직으로 인해 결산담당자의 회계결산 관련 업무기간이 매우 짧은 점과 자체 회계전문인력의 숫자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회계결산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결산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계결산 관련 업무 기간이 짧은 반면 인사이동 시 업무의 인수인계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여 지식이전을 통한 보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 중인 결산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나 자산 관련 오류에는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자산 관련 오류가 결산담당자의 실수 또는 전문성 부족보다는 기초데이터의 오류 및 정보 접근제한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결산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불일치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 계정을 오남용함으로써 현재 보고되고 있는 전기오류수정이 과대계상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계오류 발생 이후 관리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어서 해외 주요국들의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사례, 발생원인 및 대응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프랑스, 미국, 캐나다 총 3개국으로,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국가회계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고, 해외 국가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국가재무제표를 공표하는 3개국 모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랑스, 미국, 캐나다 모두 유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에 대한 기초데이터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이 회계오류의 근본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회계오류 발생 시 대응방식을 살펴보면 각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감사보고서 및 개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해당 문제의 발생원인 및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자산 관련 오류에 대하여 개별 부처의 재무감사 강화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정책제안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부처 차원에서 회계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가회계법에서 제시한 회계책임관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산담당자의 회계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결산업무기간 보장과 회계업무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자산 관련 오류의 근본원인인 기초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회계실체 간

의 정보연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중요성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회계오류 발생 시 그 기준에 따라 중요한 회계오류와 그렇지 않은 사소한 오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 추가적인 오류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의 발생원인을 결산과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보의 생산부터 의사결정자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모두 포괄하는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KIPF

---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18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자발적 탄소시장(VCM) 원칙 및 성명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5월 24일, '자발적 탄소시장[1]에의 책임 있는 참여에 관한 새로운 원칙 및 정책 성명(Statement of Policy and new Principles for Responsible Participation in Voluntary Carbon Markets)'을 발표함[2), 3)]

- 에너지부, 농무부, 재무부 등이 공동 서명함

■ 탄소배출권의 높은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접근방식,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식 등 7가지 원칙을 제시함

- 다음의 7가지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시장 참여를 유인하고자 함
  - 탄소배출권과 이를 생성하는 활동은 신뢰할 수 있는 대기의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탈탄소화를 나타내야 함
  - 탄소 크레딧 생성 활동은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지양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공동의 이익과 투명하고 포괄적인 이익 공유를 지원해야 함
  -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기업 구매자는 자체 가치 사슬 내에서 측정 가능한 배출량 감축을 우선시해야 함
  - 탄소배출권 사용자는 구매 및 폐기된 탄소 크레딧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함
  - 탄소배출권 사용자의 공개 요청(public claims)은 폐기된 탄소배출권의 기후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높은 무결성 기준을 충족하는 탄소배출권에만 의존해야 함
  - 시장 참여자들은 탄소시장 무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해야 함
  - 정책 입안자와 시장 참여자는 효율적인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캐나다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이행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제정]

■ 캐나다는 2024년 5월 28일, 「2023년 가을경제보고서이행법(Fall Economic Statement Implementation Act, 2023)」에 따라 사업소득

1)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s, VCM)이란 기업, NGO, 정부 등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시장으로, 각 배출권은 대기에서 감소되거나 제거된 탄소 1톤에 해당함

2) THE WHITE HOUSE, "FACT SHEET: Biden-WJ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Principles for High-Integrity Voluntary Carbon Markets," 2024. 5. 2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5/28/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principles-for-high-integrity-voluntary-carbon-markets/, 검색일자: 2024. 6. 12.

3) IBFD, "Biden Administration Issues Fact Sheet on Voluntary Carbon Markets Principles for Transaction of Carbon Credits," 2024. 6.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0_us_3.html, 검색일자: 2024. 6. 12.

세를 제정함[4)]

- 민간기업회계기준(ASPE) 및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조치, 친환경 기술 세제 지원, 리튬 개발 세제 지원 등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제정함
  - 특정 기업과 신탁의 순이자 및 금융 비용 공제를 제한하여 OECD 및 G20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권고에 부합하도록 함
  - 2개 이상 국가의 소득세법 차이를 악용하여 '공제·불산입의 불일치(deduction·non-inclusion mismatches)'를 야기하는 국경간 조세회피 구조에 대해 혼성불일치 규칙(hybrid mismatch rules)을 시행함
  - 무공해(zero-emission)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세율 인하의 단계적 폐지 시기를 3년 연장하고 대상 활동을 확대함
  - 탄소 포집·활용·저장 장비와 청정 기술 장비에 대해 환급 가능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함
  - 모든 리튬의 탐사 및 개발에 발생하는 지출이 캐나다 탐사 비용 및 캐나다 개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함
  - 특정 캐나다 법인, 신탁 및 파트너십의 주식이 지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주식 환매의 순 가치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함
  - 실질적 캐나다 지배 민간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CCPC)으로 불리는 기업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영국

[필라2 추가세액 등록 관련 실무지침 발간]

■ 영국 국세청(HMRC)은 2024년 5월 22일, 필라2 추가세액(Pillar Two top-up taxes) 등록에 관한 방법을 담은 실무 지침서를 발간함[5), 6)]

- 지침에 따라 영국 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법인을 두고 있고 지난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서 연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필라2 추가세액 등록을 해야 함
  - 필라2 추가세액 등록은 필라2 납부세액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함
  - 202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된 그룹의 첫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함
  - 신고법인은 기본적으로 최종모기업이나, 최종모기업은 그룹내 다른 법인을 신고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필라2 추가세액의 첫 번째 신고서는 아래의 기한 내에 신고되어야 함

4) IBFD, "Canada Substantively Enacts Business Income Tax Measures in Fall Economic Statement Implementation Act," 2024. 6.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03_ca_1.html, 검색일자: 2024. 6. 12.
5) IBFD, "United Kingdom - Tax Authority Publishes Information on Registration for Pillar Two Taxes," 2024. 5.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22_uk_1.html, 검색일자: 2024. 5. 31.
6) GOV.UK., "Report Pillar 2 top-up taxes," 2024. 5. 20., https://www.gov.uk/guidance/report-pillar-2-top-up-taxes, 검색일자: 2024. 6. 3.

- 필라2 추가세액의 첫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되어야 함
- 필라2 추가세액의 첫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경우, 그룹의 회계기간 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되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아일랜드

[광물유류세, 천연가스세, 고체연료탄소세 인상]

■ 아일랜드는 2024년 6월 7일, 광물유류세(mineral oil tax), 천연가스세(natural gas tax), 고체연료탄소세(solid fuel carbon tax)를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함[7]

- 아일랜드 재무부는 특정 연료에 대한 광물유류세를 1톤당 7.5유로[8] 인상함
  - 기존의 1톤당 48.5유로[9]에서 56유로[10]로 인상됨
- 또한 천연가스세 및 고체연료탄소세를 1톤당 7.5유로로 인상함
  - 기존의 1톤당 48.5유로에서 56유로로 인상됨
- 금번 인상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스페인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시행 법안 승인]

■ 스페인은 2024년 6월 4일,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시행하는 법안을 승인함[11), 12)]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회계연도의 순매출액이 연간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MNE) 그룹 또는 대규모 국내 그룹에 15%의 최저 실효세율을 부과하도록 국내법으로 규정함
-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경우 보완세(Impuesto complementario)[13]를 징수함
  - 보완세는 2022년 발효된 최저 법인세율인 15%와 양립할 수 있음[14]
  - DMTT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자회사의 소득을 얻는

7) IBFD, "Ireland-Revenue Raises Taxes on Mineral Oil, Natural Gas, Solid Fuel Carbon," 2024. 6. 1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1_ie_1.html, 검색일자: 2024. 6. 14.
8) 2024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1,089원임
9) 2024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1,724원임
10) 2024년 6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만 2,816원임
11) La Moncloa, "Referencia del Consejo de Ministros," 2024. 6. 4.,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ferencias/Paginas/2024/20240604-referencia-rueda-de-prensa-ministros.aspx#empresas, 검색일자: 2024. 6. 12.
12) IBFD,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Bill Implementing Minimum Taxation Directive (Pillar Two)," 2024. 6. 1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0_es_1.html, 검색일자: 2024. 6. 12.
13) 적격소재국 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DMTT)
14) 보완세는 조정된 회계 이익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는 지침에 의해 설정된 매개변수로 계산되며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지만 법인세는 스페인의 과세기준에 따라 결정됨

경우 1차 보완세(Impuesto complementario primario)[15]를 모회사에 부과함

- 스페인에 기반을 둔 MNE 그룹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얻는 경우 2차 보완세(Impuesto complementario secundario)[16]를 스페인 내 자회사에 부과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오스트리아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 오스트리아 재무부는 EU 지침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화한 「2024년 세법 개정안(Abgabenänderungsgesetz 2024)」을 발표함

- 오스트리아 정부는 EU의 부가가치세 지침 Council Directive(EU) 2020/285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국경 간 면제 옵션 도입 예정임을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함
  - 면제 신청 조건은 사업체의 EU 전체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기준 10만유로[17]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연도 매출 또한 1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오스트리아 외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도 적용될 예정임[18]
- 그 외 자선단체 식품 기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입 및 소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제도 한도를 3만 5천유로[19]에서 4만 2천유로[20]로 인상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정효림 세무사>

룩셈부르크

[「세법 개정안」 발표]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24년 5월 23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기업에 대해 참여소득면제 포기 선택권을 도입하고 최소 순자산세(l'impôt minimum sur la fortune) 관련 내용을 개정함

- 참여소득면제 즉, 배당소득에 대한 50% 과세면제 또는 EU 모자회사지침(2011/96)에 따른 과세면제에 대한 포기 선택권을 도입함
  - 과세면제 요건이 보유 자산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120만유로[21] 이상인 경우에 포기가 가능하며, 최소 10% 지분율 기준으로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음

15) IIR(income inclusion rule)
16) UTPR(undertaxed profits rule)
17) 2024년 6월 14일 환율 기준 1억 4,800만원임
18) The Parliament of Austria, Abgabenänderungsgesetz 2024 – AbgÄG 2024 (338/ME), https://www.parlament.gv.at/gegenstand/XXVII/ME/338, 검색일자: 2024. 6. 14.
19) 2024년 6월 17일 환율 기준 5,175만원임
20) 2024년 6월 17일 환율 기준 6,210만원임
21)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억 7,596만원임

<표 1> 룩셈부르크 최소 순자산세 개정안

(단위: 유로)

구분	요건		부과세액
기존 규정	대차대조표 총액이 35만유로[1] 이하		535[2]
	자산의 90% 이상이 금융자산이고 대차대조표 총액이 35만유로 초과		4,815[3]
	대차대조표 총액이 3천만유로[4] 초과		32,100[5]
개정 규정	대차대조표 총액 기준	35만유로 이하	535
		35만유로 초과 2백만유로[6] 이하	1,605[7]
		2백만유로 이상	4,815

주: 1)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1,892만원임
2)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9만 3천원임
3)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14만 7백원임
4)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44억 9,630만원임
5)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761만 1천원임
6)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억 6,526만원임
7)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8만 5백원임

출처: Chambre des Députés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N°8388,"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7/058/294588.pdf, 검색일자: 2024. 6. 11.; IBFD, "Luxembourg Constitutional Court: Minimum Net Worth Tax for Companies Is Unconstitutional," 2023. 11.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1-23_lu_1%23tns_2023-11-23_lu_1, 검색일자: 2024. 6. 4. 내용 저자 정리

- 기존에는 자동으로 면제되었으나 과세면제 혜택의 포기 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가 유연하게 손실 이월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최소 순자산세가 위헌이라는 2023년 10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22] 기존의 자산 요건을 삭제하고 대차대조표 총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23]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원천징수와 관련한 전자신고를 2025 과세연도부터 시행함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에 대해 108유로[24]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소득 요건의 범위를 달리 정함

- Class 1a[25]의 개인은 소득이 1만 3,500유로[26]에서 2만 8,499유로[27] 사이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 Class 2[28]의 개인은 소득이 1만 3,500유로에서 6만 4,499유로[29] 사이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나, 이 중 공동과세를 선택한 부부 또는 파트너는 1인이 소득의 70% 이상

22) IBFD, "Luxembourg Constitutional Court: Minimum Net Worth Tax for Companies Is Unconstitutional," 2023. 11.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1-23_lu_1%23tns_2023-11-23_lu_1, 검색일자: 2024. 6. 4.
23) 순자산세는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최소 순자산세가 부과됨
24)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원임
25) 과세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별했거나 64세 이상인 납세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거나 부부 공동 과세에 따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납세자를 의미함
26)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001만 3천원임
27)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224만 9천원임
28) 납세자가 부부인 경우를 의미함
29)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61만 9천원임

을 소유한 경우 소득이 3만 4,500유로[30]에서 6만 4,499유로[31] 사이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

- 원천징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2025 과세연도부터 전자신고를 해야 함
  - 성과에 따라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 고용주, 임시 근로 계약자, 연금펀드 및 금융 혜택을 지급하는 특정 단체가 송금하는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액 공제 신고
  - 가사, 육아 및 기타 부양 등을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그 의존 정도에 따라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신고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노르웨이

[해외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공제 변경 제안]

■ 노르웨이 재무부는 2024년 6월 10일, 해외 연금제도에 납입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32]

- 변경의 목적은 영국과 같이 유럽연합 내부와 외부의 다른 국가 출신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 제안된 변경안은 과세소득 공제 규칙의 적용 범위를 유럽경제지역(EEA)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로 확대함
  - 현재 이러한 권리는 노르웨이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해외 연금 제도에 가입한 이력이 1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유럽경제지역(EEA) 근로자 및 연금제도에만 적용됨
- 현행법상 공제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의 급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노르웨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법안 초안에서도 해당 요건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또는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노르웨이에서의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체 과세연도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예정임
  - 이는 노르웨이에서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연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제안된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납세자는 2024년 8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덴마크

[산업 전반에 통일된 CO_2세 채택]

■ 덴마크 의회는 2024년 6월 4일, EU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안팎의

30)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14만 6천원임
31) 2024년 6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61만 9천원임
32) IBFD, "Norway Proposes Changes to Tax Deductions for Savings in Foreign Pension Schemes," 2024. 6.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2_no_2.html, 검색일자: 2024. 6. 19.

모든 산업체에 통일된 CO_2세를 도입하는 두 가지 법안을 채택함[33]

-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CO_2 배출량을 7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채택된 법안에 따르면 2030년 CO_2 배출량에 대한 세금 수준은 EU ETS 외부 기업의 경우 CO_2 배출량 1톤당 750덴마크크로네[34], EU ETS 내부 기업의 경우 CO_2 배출량 1톤당 375덴마크크로네[35]가 될 것임
- 광물학적 공정의 2030년 CO_2 배출량에 대한 세금 수준은 1톤당 125덴마크크로네[36]임
- 또한 채택된 법안은 CO_2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업이 포집한 CO_2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곧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핀란드

[「미술품 등의 부가가치세율 개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서명]

■ 핀란드 대통령은 2024년 4월 29일, 부가가치세율에 관한 EU 지침(Directives 2006/112/EC) 및 (EU) 2020/285를 개정하는 2022년 4월 5일 이사회 지침 (EU) 2022/542를 내국세법으로 이행하는 법률 제안서 HE 32/2024에 서명함[37]

- 새로운 법률은 구매자가 핀란드에 있는 경우 특정 가상이벤트 및 활동에 대한 과세를 도입함
  - 특정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10%의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벤트에도 적용됨
  - 그러나 국내법에는 가상이벤트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 EU 지침에 따라 미술품 등에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미술품 등에는 핀란드의 마진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핀란드는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에 마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마진제도는 과세 거래자가 예술가 또는 그 법적 승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예술품의 공급에도 적용되며,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이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새로운 법에 따르면 해당 상품에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마진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마진제도의 혜택을 상품에 대해서는 더이상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을 적

33) IBFD, "Denmark Adopts Industry-Wide Uniform CO_2 Tax," 2024. 6.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06_dk_1.html, 검색일자: 2024. 6. 19.
34) 2024년 6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만 9,212원임
35) 2024년 6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4,606원임
36) 2024년 6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만 4,868원임
37) IBFD, "President Signs Law Regarding VAT Treatment of Virtual Events and Amending Margin Scheme for Works of Art, Collectors' Items and Antiques," 2024. 6.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6-17_fi_2.html, 검색일자: 2024. 6. 19.

용할 수 없음

-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뉴질랜드

[농업 분야 배출권 거래제 참여 철회]

■ 뉴질랜드 농업부 및 기후변화부 장관은 2024년 6월 11일 농업, 동물 가공업자 및 비료 회사들의 배출권 거래제 참여 철회를 발표함[38)]

- 배출권 거래제 참여 철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법 개정안」을 2024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비농업 활동과 관련한 동물 가공업 및 비료 회사의 배출량은 계속해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됨
- 1차 산업 부문 및 농장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 부문 간의 기초 부문 기후 행동 파트너십으로 설립되었던 정부기관인 'He Waka Eke Noa'는 6월 11일 해체됨
  - 부과금 부과 기관 및 목축 부문 단체와 직접 협력하여 생물성 메탄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아울러 메탄 백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사육 방식, 메탄 및 아산화질소 억제제와 같은 농업 연구 및 개발 비용에 더 투자하여 농장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생산을 보호할 계획임

[2024년 예산안 관련 과세 조치 왕실 승인]

■ 뉴질랜드 왕실은 2024년 5월 31일,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무부가 제출한 과세 조치 법안을 승인함[39)]

■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의 5개 소득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소득 상한액이 확대되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됨[40)]

- 변경된 소득 구간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세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됨

■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인소득세 관련 공제액 및 공제 기준액 등을 인상함에 따라 공제 혜택의 규모가 확대됨

- 1인 가구 세액 공제의 소득 상한액을 4만 8천 뉴질랜드달러[41)]에서 7만뉴질랜드달러[42)]로 인상함

38) Beehive.gov.nz, "Agriculture to come out of the ETS," 2024. 6. 11., https://www.beehive.govt.nz/release/agriculture-come-out-ets, 검색일자: 2024. 6. 17.
39) IBFD, "New Zealand - Parliament Passes Taxation (Budget Measures) Bill on Budget 2024-25," 2024. 6.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6-03_nz_1, 검색일자: 2024. 6. 17.
40) Budget24, "Tax Relief," https://budget.govt.nz/budget/2024/at-a-glance/tax-relief.htm, 검색일자: 2024. 6. 17.
41)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75만원임
42)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36만원임

- 이에 따라 기존 4만 4천뉴질랜드달러[43] 이상부터 적용되던 1뉴질랜드달러[44]당 13센트[45]의 감면율 역시 6만 6천뉴질랜드달러[46] 이상부터로 기준액이 인상됨

- 근로소득공제(In-Work Tax Credit) 기본 요율을 주당 25뉴질랜드달러씩 인상함
- 최소 가족 세액 공제(Minimum Family Tax Credit) 적용 소득 상한액을 세후 3만 5,316뉴질랜드달러[47]로 인상함

■ 2024년 7월 1일부터 가족 지원 세액공제(Family Boost Tax Creidt)를 도입하여 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이하 ECE) 비용의 최대 25%를 환급함

- 본 공제는 20시간 ECE 요건과 함께 사회 개발의 보육 보조금을 고려한 후 적용됨
- 최대 공제 금액은 분기당 975뉴질랜드달러[48]이며, 연소득 14만뉴질랜드달러[49] 이상인 가구의 경우 공제 금액이 감소하고 18만뉴질랜드달러[50]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선임연구원>

OECD

[「2024 조세협력 진행보고서」 발간]

■ OECD는 2024년 5월 24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

<표 2> 뉴질랜드 개인소득세 소득 구간 변경안

(단위: 뉴질랜드달러, %)

	기존	변경	세율
1	0~14,000[1]	0~15,600[2]	10.5
2	14,001~48,000[3]	15,601~53,500[4]	17.5
3	48,001~70,000[5]	53,501~78,100[6]	30
4	70,001~180,000[7]	78,101~180,000[8]	33
5	108,001~	동일	39

주: 1)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0원 ~ 약 1,189만원임
2)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0원 ~ 약 1,325만원임
3)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89만원 ~ 약 4,075만원임
4)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25만원 ~ 약 4,542만원임
5)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075만원 ~ 약 5,943만원임
6)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542만원 ~ 약 6,631만원임
7)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43만원 ~ 약 1억 5,282만원임
8)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30만원 ~ 약 1억 5,282만원임

출처: Budget24, "Tax Relief," https://budget.govt.nz/budget/2024/at-a-glance/tax-relief.htm, 검색일자: 2024. 6. 17.

43)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43만원임
44)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9원임
45)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0원임
46)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603만원임
47)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98만원임
48)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4만 4,398원임
49)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886만원임
50) 2024년 6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282만원임

한 「2024 조세협력 진행보고서(2024 Progress Report on Tax Co-operation)」를 발간함[51]

- 보고서는 법인세와 관련한 국제조세협력으로써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규칙, 법인세 이외의 문제로 과세당국의 정보 활용, 나아가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국제조세협력 쟁점을 다룸[52]
  - 제1장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각 과세당국의 국제조세협력을 지원하고자 「2023 조세협력 진행보고서」가 제안하였던 7가지 원칙[53]이 GloBE 규칙의 행정절차, 분쟁해결, 이중조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룸
  - 제2장은 법인세 이외의 쟁점으로 과세당국의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수익적 소유권, 실시간 정보 흐름을 다룸
  - 제3장은 개발도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쟁점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디지털화 문제로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과세당국의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룸
- G7 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서 G7은 국제조세협력과 관련하여 OECD 진행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며 아래의 입장을 표명함[54]
  - 두 개의 필라 이행이 최우선 과제이며,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에게 2024년 6월 30일까지 필라1 다자간 협약에 서명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함
  - 2027년 또는 늦어도 2028년까지 첫 정보 교환을 목표로 하여 관련 관할국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CARF)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함
  -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조세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UN 임시위원회의 「UN 국제조세협력 기본협약 초안」을 위한 논의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조세체계를 지원해야 하며 합의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51) IBFD, “OECD Releases 2024 Progress Report as G7 Leaders Discuss End-June Deadline for Pillar One Multilateral Convention,” 2024. 5. 2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28_o2_2.html, 검색일자: 2024. 6. 4.

52) OECD, “2024 Progress Report on Tax Co-oper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s://www.oecd.org/tax/2024-progress-report-on-tax-co-operation-for-the-21st-century-24adfedf-en.htm, 검색일자: 2024. 6. 4.

53) 7가지 원칙은 ① 원스탑 신고, ② 완전한 디지털 소통, ③ 납세자 참여를 통한 중앙 프로젝트 관리, ④ 공통 및 통합된 위험 평가, ⑤ 식별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 조사 및 조치, ⑥ 조기에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⑦ 이중 의무 배제임

54) G7 Italia, “G7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Communiqué,” https://www.g7italy.it/wp-content/uploads/Stresa-Communique-25-May-2024.pdf, 검색일자: 2024. 6. 4.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2025년 EU 연간 예산안 발표(2024. 6. 19.)[1]

● EU 예산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 조달·지원, 위기 대응을 함께하여 유럽 경제와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 EU의 장기 예산(2021~2027년 EU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에서 지출 우선순위와 한도를 정하고, 장기 예산의 한도 내에서 매년 연간 예산이 협상·채택됨

● 2025년 예산은 EU 회원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역할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EU 장기 예산인 2021~2027년 EU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이주 관련 조치 등에 관한 개정 사항(2024년 2월)과 EU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반영[2]

● 2025년 예산안은 2021~2027년 EU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의 EU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

- (규모) 법적 한도인 승인기준[3]으로는 1,997억 유로, 실제 지급 예정 금액인 지급기준으로는 1,527억유로로 편성(<표 1> 참고)
-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연구·혁신, 유럽 전략 투자, 단일시장, 우주 부문에 승인기준 213억 7,770만유로, 지급기준 204억 3,890만유로 편성
  - (연구·혁신) 승인기준 135억유로를 편성하였으며, 그중 EU 주요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127억유로를 배정하고 동 프로그램 내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4] 지원
  - (유럽 전략 투자) 승인기준 46억유로를 편성하고 그중 유럽연결시설(Connecting Europe Facility)[5] 28억유로,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 11억유로, EU 주요 우선순위 투자인 InvestEU[6] 3억 7,800만유로 편성
  - (단일시장) 단일시장 프로그램에 승인기준

1) EU 집행위원회, “EU budget: funding Europe's 2025 priorities,” 2024. 6. 19., https://commission.europa.eu/news/eu-budget-funding-europes-2025-priorities-2024-06-19_en, 검색일자: 2024. 6. 24. EU 집행위원회, EU Budget 2025 aims to reinforce funding for Europe's priorities, 2024. 6. 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247, 검색일자: 2024. 6. 24.
EU 집행위원회,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2024. 6,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7a0420e1-599e-4246-9131-ccb7d505d6d9_en?filename=DB2025-Statement-of-Estimates_0.pdf, 검색일자: 2024. 6. 24.

2) 2024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이주 및 서부발칸반도 등 파트너 지원, 반복되는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을 고려하여 EU 장기 예산인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의 한도를 처음으로 개정하기로 합의(EU 집행위, “First time ever revision of the EU long-term budget will help address the EU's main challenges,” 2024. 2. 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602, 검색일자: 2024. 6. 25.)

3)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4) 2022년 EU 집행위는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제안하면서 향후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반도체 연구 및 기술을 강화하고, 생산시설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 분야를 지원

5) 국경 간 인프라 개선

6) 연구 및 혁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보건 분문, 전략적 기술 투자

6억 1,300만유로를 편성하고, 사기 방지, 조세 및 관세 업무에 2억 500만유로 배정

• (우주) 승인기준 21억유로를 편성하여 유럽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우주 전략적 분야 통합을 지원하고, EU의 새로운 안전 연결 프로그램에 따라 위성 연결에 1억 9,600만유로 투자

-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지역개발·통합, 회복 및 복구, 사람·사회적 결속 및 가치 부문으로 구성되고 승인기준 781억 2,820만유로, 지급기준 416억 1,870만유로 편성

• (지역개발·통합) 경제·사회·영토 차원의 결속 및 녹색 전환 및 EU 우선순위 프로젝트 지원

• (회복 및 복구) 포괄적 의료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EU4Health에 5억 8,300만유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RescEU[7]에 2억 300만유로 지원(승인기준)

• (사회적 결속 및 가치) EU 회복 수단인 차세대EU(NGEU)[8]의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 52억유로 편성, 교육·유학 기회 지원(Erasmus+) 40억유로, 예술가와 창작자 지원 3억 5,200만유로, 정의·권리·가치 제고를 위해 2억 3,500만유로를 편성(승인기준)

- (3. 천연자원 및 환경) 농업 및 해양 정책, 환경 및 기후 대응으로 구성되고, 승인기준 572억 7,500만유로, 지급기준 526억 8,240만유로 편성

• (농업 및 해양 정책) 농·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농식품과 수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를 위해 공동 농업 정책에 승인기준 538억유로, 유럽 해양·수산·양식 기금에 9억유로 등을 편성(승인기준)

• (환경 및 기후 대응) 승인기준 24억유로를 편성하여 주로 기후 변화 완화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인 LIFE 프로그램에 7억 7,710만유로, 모두를 위한 녹색 전환 지원 프로그램(Just Transition Fund)[9]에 15억유로 배정

- (4. 이주 및 국경 관리) 이주 및 이민, 국경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고 승인기준 47억 7,650만유로, 지급기준 32억유로로 편성

• (이주 및 이민) 승인기준 20.9억유로를 편성하고 그중 19억유로는 EU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지원에 사용

• (국경 관리) 승인기준 26.7억유로 중 통합국경관리기금[10] 14억유로, 유럽 국경 및 해안경비(Frontx)[11] 9억 9,970만유로 투자

- (5. 안보 및 국방) 승인기준 26억 1,700만유로, 지급기준 21억 2,900만유로로 편성

7) Union Civil Protection Mechanism
8)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0억유로를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회원국에 지원
9)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10) Integrated Border Management Fund(IBMF)
11)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Frontex)

• (안보) 승인기준 7억 8,400만유로를 편성하여 주로 테러, 급진주의,[12] 조직 범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ISF[13] 프로그램에 3억 3,400억유로 투자

• (국방) 국방 문제해결에 18억유로, 유럽 방위기금[14] 내에 방위력 개발 및 연구에 14억유로, 군대 동원(Military Mobility) 지원에 2억 4,450만유로 투입(승인기준)

- (6.파트너 및 세계) 승인기준 162억 5,820만 유로, 지급기준 144억 63만유로로 편성

• 전 세계 EU 파트너 지원에 승인기준 163억 유로를 편성하고, 글로벌 유럽(NDIC)[15] 109억유로, 사전가입 지원[16] 22억유로, 서부발칸지역 발전기금 5억유로, 인도적지원기금 19억유로 등으로 구성

• 우크라이나 기금을 통해 43억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109억 유로 규모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승인기준)

■ 유럽중앙은행(ECB), 현행 정책금리 인하(2024. 6. 6.)[17]

<표 1> 2025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5년		2024년		전년 대비 변화율(%)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378	20,439	21,493	20,828	-0.5	-1.9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8,128	41,619	74,564	33,720	4.8	23.4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6,360	30,259	64,665	24,156	2.6	25.3
2.b. 회복력 및 가치	11,768	11,360	9,899	9,564	18.9	18.8
3. 천연자원 및 환경	57,275	52,682	57,339	54,151	-0.1	-2.7
4. 이주 및 국경관리	4,777	3,201	3,893	3,249	22.7	-1.5
5. 안보 및 국방	2,617	2,129	2,697	2,035	-3	4.6
6. 파트너 및 세계	16,258	14,406	16,731	15,315	-2.8	-5.9
7. 유럽 공공 행정	12,614	12,614	11,988	11,988	5.2	5.2
기타 특수 기금[1)]	6,670	5,594	6,518	5,491	2.3	1.9
합계 (EU 27개국 GNI 대비 %)	199,717 (1.08%)	152,684 (0.83%)	195,223 (1.1%)	146,778 (0.83%)	2.3	4

주: 1) 기타 특수 기금은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세계화조정기금(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 브렉시트 준비금(Brexit Adjustment Reserve)을 포함

출처: EU 집행위원회,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2024. 6, pp. 4~5,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7a0420e1-599e-4246-9131-ccb7d505d6d9_en?filename=DB2025-Statement-of-Estimates_0.pdf, 검색일자: 2024. 6. 24.

12) 급진주의(Radicalisation)는 특정 신념이나 이념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종종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목적을 위해 급진적이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의미

13) Internal Security Fund(ISF)

14) European Defence Fund(EDF)

15)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Global Europe(NDICI-Global Europe)

16) EU 사전가입지원(Pre-Accession Assistance (IPA III))은 EU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비가입 국가의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제도

17)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6. 6.,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0606~2148ecdb3c.en.html, 검색일자: 2024. 6. 10.

- (정책금리)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9개월간 동결하였던 주요 정책금리를 0.25%p씩 인하 결정
  - 기준금리(4.5→ 4.25%), 수신금리(4%→ 3.75%), 한계대출금리(4.75→ 4.5%)
- (물가) 2023년 9월 이사회 결정 이후 물가상승률이 2.5%p 이상 하락하였고, 물가상승률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근원 물가상승률도 완화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4년 2.5%, 2025년 2.2%, 2026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대내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강하여 2025년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 2.8%, 2025년 2.2%, 2026년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자산매입)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자산매입 프로그램'[18]과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19]의 정상화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힘

IMF

■ IMF 집행위원회, 에콰도르에 대한 40억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20] 협정 승인(2024. 5. 31.)[21]

<표 2> EU 정책금리 인상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9월	11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월	4월	6월
기준금리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4.25	4.50	4.50	4.50	4.50	4.25
한계대출금리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4.50	4.75	4.75	4.75	4.75	4.50
수신금리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4.00	4.00	4.00	3.75
변동폭(%p)	+0.5	+0.75	+0.75	+0.5	+0.5	+0.5	+0.25	+0.25	+0.25	+0.25	-	-	-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4. 6. 11.
_____,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6. 6.,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0606~2148ecdb3c.en.html, 검색일자: 2024. 6. 10.

18)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은 유럽중앙은행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외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유럽중앙은행, "What is the ECB's asset purchase programme?," 2022. 11. 25., https://www.ecb.europa.eu/ecb/educational/explainers/tell-me-more/html/asset-purchase.en.html, 검색일자: 2024. 6. 10.)

19)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PEPP)은 코로나19로 인한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과 유로존에 미칠 심각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시작된 민간 및 공공 부문 채권 임시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2020년 3월 초기 7,500억유로 규모에서 2020년 6월 4일 6천억유로, 12월 10일 5천억유로를 추가하여 총 1조 8,500억유로 규모로 확대되었고,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적격 자산 범주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함

20) 확대신용제도(EFF)는 해결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대출프로그램으로 최대 4년 동안 승인될 수 있으며, 4년 반~10년 동안 12회 반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음. EFF는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반하며 일반적으로 출자금액의 연간 한도는 쿼터의 200%, 약정 기간동안 누적 한도는 쿼터의 600%

21)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48-Month US$4 Billion Extended Fund Facility Arrangement for Ecuador," 2024. 5. 3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5/31/pr-24197-ecuador-imf-board-approves-48-month-us-4-billion-eff-arrangement, 검색일자: 2024. 6. 13.

- (배경) 에콰도르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7개월간의 확대신용제도(EFF) 협정이 만료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안보 위기, 석유 수입 및 금리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급격한 거시경제 및 재정 악화가 발생함
- (주요 내용) IMF 집행위원회는 에콰도르에 대해 30억SDR(쿼터의 430%, 40억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제도 48개월 약정 협정을 승인
  - 이사회의 승인으로 에콰도르는 약 10억달러를 공공 예산으로 즉시 지출할 수 있게 됨
  - 에콰도르 당국 정책 의제의 핵심 요소에는 재정 및 채무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 안전망 확대, 금융 부문 탄력성 강화, 투명성 및 거버넌스 강화가 포함됨
  - 에콰도르 당국은 강건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동성과 재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 정책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IMF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달러화 사용(dollarization)을 유지(safeguard)[22]하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에콰도르의 정책 지원을 목표로 함

OECD

■ OECD, 2024년 1분기 G20 GDP 성장률 발표 (2024. 6. 12.)[23]

[그림 1] G20 국가의 2024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주: 1.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데이터
2. 2023년 4분기 캐나다, 유로연합, 멕시코의 성장률은 0%

출처: OECD, "G20 GDP growth picks up a little in the first quarter of 2024," Figure1, p. 1, 2024. 6. 12.

22) 에콰도르는 2020년 초 자국 화폐인 수크레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였으며, 달러화 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23) OECD, "G20 GDP Growth - First quarter of 2024," 2024. 6. 12., https://www.oecd.org/sdd/na/g20-gdp-growth-first-quarter-2024-oecd.htm, 검색일자: 2024. 6. 17.

- 2024년 1분기 G20 국가의 GDP 성장률(잠정)은 0.9%로 전 분기 0.7% 성장에서 소폭 상승
  - 1분기 G20의 경제 성과는 주로 중국(1.6%)과 인도(1.9%)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두 국가 와 함께 튀르키예(2.4%), 사우디아라비아(1.4%), 한국(1.3%), 인도네시아(1.2%)의 성장률이 G20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4분기 0.8%에서 2024년 1분기 0.3%로 둔화되었고, 일본은 동기간 0.1%에서 -0.5%로 위축됨
  - 브라질, 영국, 독일은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이후, 각각 0.8%, 0.6%, 0.2%로 회복
  -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은 4분기에 제로 성장 이후 1분기에 각각 0.4%, 0.3%, 0.3%로 증가

미국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2024. 6. 12.)[24]

-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기존 수준(5.25~5.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다음과 같이 현 경제상황을 평가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물가) 물가상승세는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
  - (노동시장) 고용증가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25]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충분히 제약적(restrictive)이며, 2% 목표를 향한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2.1%, PCE 물가상승률은 2.6%,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5.1%로 전망[26]
  - 직전 경제전망(2024년 3월)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의 전망은 동일하나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됨
  - 정책 금리의 경우 직전 전망 대비 금번 전망에서 2024년 말(4.6→5.1%)과 2025년 말(3.9→4.1%)에 모두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장기 금리 전망 또한 2.8%로 상승

24)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6. 1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0612a1.pdf, 검색일자: 2024. 6. 21.
25)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문, 2024. 6. 12.,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0612.pdf, 검색일자: 2024. 6. 21.
26)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4. 6. 1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jtabl20240612.pdf, 검색일자: 2024. 6. 21.

<표 3> 미국 2024년 6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2024년	2025년	2026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1	2.0	2.0	1.8
- 3월 전망치	2.1	2.0	2.0	1.8
실업률	4.0	4.2	4.1	4.2
- 3월 전망치	4.0	4.1	4.0	4.1
PCE 물가상승률	2.6	2.3	2.0	2.0
- 3월 전망치	2.4	2.2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2.8	2.3	2.0	
- 3월 전망치	2.6	2.2	2.0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전년도의 4분기 수치와 기준연도 4분기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율을 계산하였으며, 실업률을 해당연도 4분기의 실업률을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각 위원들이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able 1, 2024. 6. 12.

■ 의회예산처(CBO), 「2024~2034년 예산·경제 수정 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보고서」[27] 발표(2024. 6. 18)[28]

● (재정수지)[29]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3%(2,210억달러) 증가한 1조 9,900억달러이며, 향후 10년 뒤인 2034회계연도에는 2.8조달러(GDP 대비 6.9%)로 상승 전망

-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월 전망(GDP 대비 5.6%)[30] 대비 4,080억달러 증가한 GDP 대비 6.7%
-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 수치가 감소하나 전망 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4회계연도에는 6.9% 수준으로 상승

● (수입) 2024회계연도 연방수입은 전년 대비 10.1%(4,490억달러) 증가한 4.9조달러로 전망되며, 연방수입은 2024년에 일시적으로 확대된 후 2025년에 세입의 감소를 거치지만 이후 2034년까지 증가 전망

- 2024회계연도 수입은 2월 전망(GDP 대비 17.5%) 대비 450억달러 감소한 GDP 대비 17.2%
- 2024회계연도 세입의 일시적 확대는 2023회계연도에 납부 유예된 세금이 징수되어

27)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 P.L. 93-344)」과 「적자통제법(Deficit Control Act of 1985 / P.L.99-177)」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4. 5. 12.까지 입법된 정책 기준, 경제 전망은 2025. 5. 2.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28) CBO, "An Update to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2024. 6. 18., https://www.cbo.gov/publication/60039, 검색일자: 2024. 6. 21.

29) 지출과 적자 규모는 timing shift(회계연도 첫 일이 주말일 시 미리 발생되는 지출)를 반영한 수치

30)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2024. 2. 7.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

- (지출) 2024회계연도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12.4%(7,570억달러) 증가한 6.9조달러로 전망되며, 이후 2027회계연도까지 2025년(GDP 대비 23.5%)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4회계연도 지출은 2월 전망(GDP 대비 23.1%) 대비 3,630억달러 증가한 GDP 대비 23.9%
  - 연방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4회계연도에는 10조달러(GDP 대비 24.9%) 초과 전망
  - 의무지출은 2024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11.8% 증가한 4조 1,910억달러(GDP 대비 14.7%)로 향후 10년 뒤인 2034회계연도에는 6조달러(GDP 대비 15.3%)를 넘어설 전망
  - 재량지출은 2024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4.5% 증가한 1조 7,970달러(GDP 대비 6.3%)로 향후 10년 뒤인 2034회계연도에는 2조 2,590억달러(GDP 대비 5.5%) 전망
- (채무)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31]수치는 2024회계연도 99%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4회계연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22.4% 전망(연방채무의 GDP 대비 과거 50년 평균은 48.3%)
  - 2024회계연도 연방정부 채무는 2월 전망(99%) 대비 2,810억달러 증가(GDP 대비 수치는 동일)
- (경제성장) 2024년 실질성장률은 소비지출 증가의 둔화와 무역 수입 증가율이 확대되면서 2023년 3.1%에서 1.1%p 하락한 2% 전망
  - (소비지출) 2023~2024년 초까지는 예상보다는 강한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으나, 향후 3년간 신용시장 경색과 임금 상승률 약화로 소비지출 증가율이 점차 하락

<표 4> 미국 CBO 예산 전망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전망	실적	전 망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	2034년
예산총량							
수입	4,441	4,890	5,038	5,394	5,756	…	7,459
지출	6,123	6,880	6,975	7,244	7,512	…	10,320
재정적자	1,683	1,990	1,938	1,851	1,756	…	2,862
연방채무[1)]	26,236	28,178	30,188	32,118	33,949	…	50,664
예산총량							
수입	16.5	17.2	17.0	17.5	18.0	…	18.0
지출	22.7	23.9	23.5	23.5	23.5	…	24.9
재정적자	6.3	6.7	6.5	6.5	6.0	…	6.9
연방채무[1)]	97.3	99.0	101.6	104.1	106.2	…	122.4

주: 1. 지출과 적자 규모는 회계연도 첫 일이 주말일 시 일어나는 지출 시기변경의 영향을 조정(remove)한 결과(adjusted for timing shift)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Table 1-1, 각 연도.

31)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표 5> 미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재정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2028년	2029~2034년
		실적[1]	연도별 전망[2]				
실질성장률[3]		3.1	2.0	2.0	1.8	1.7	1.8
물가	CPI-U[4]	3.2	3.0	2.3	2.2	2.2	2.2
	PCE	2.8	2.7	2.1	1.9	1.9	2.0
실업률[5]		3.6	3.9	4.0	4.2	4.4	4.5

주: 1) 연평균
2)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3) 전년 대비 증가율
4) Urban
5) 연평균

출처: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2024. 6. 18. Table 2-1, p. 35

할 전망(2023: 2.7% → 2026: 1.3%)

- (무역 수입) 2023년에 음의 성장률(-0.1%)을 기록했던 무역 수입은 기업의 재고 확충과 자본재(컴퓨터, 반도체 등) 수요 증가로 올해(2024) 3.8% 증가율을 보이며 확대 전망

● (물가) 2024년 초반에는 물가지수가 급상승*하였으나, 2024년 전체적으로는 둔화되어 2.7%로 전망되며 주요 둔화 요인은 아래(①~③)와 같음

* 개인소비지출(PEC) 증가율의 경우, 2024년 4분기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측정치[32](2%)인 1.8%까지 하락하였으나, 2024년 1분기에 3.3%까지 급격히 증가

- ① 공급망의 대체적인(largely) 회복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 ②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임금 상승 하방 압력 작용, ③ 장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특정 상품(자동차, 주거비용[33], 가구[34] 등)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 작용

● (이자율) 정책금리는 2024년 말에 5.3% 기록 후 2025년 1분기부터는 물가상승 둔화와 실업률 증가 영향으로 인하되고, 2028년 4분기에는 3% 전망

● (노동시장) 2024년은 재화·용역 공급의 수요 초과로 인해 노동 시장 완화 전망

- 고용 증가율은 2027년까지 약해지며, 임금 상승률 또한 둔화 전망
- 실업률은 2029년까지 상승하며, 이후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

일본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4분기[35] 예산사용현

32) The Federal Reserve's preferred measure of inflation
33) Shelter services
34) Home furnishings
35) 일본의 2023회계연도는 2023. 4. 1.~2024. 3. 31.로, 2023회계연도 4분기는 2024. 1. 1.~2024. 3. 31.을 의미

황[36] 발표(2023. 6. 27.)[37]

- 2023회계연도 4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28조 123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34조 815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6조 692억엔 초과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4분기 수입 비율은 21.9%로 전년 동기 대비 10.6%p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채금 등의 감소에 기인
  -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3.4%로 전년 동기 대비 0.8%p 감소하였으며, 이는 감염증 대책비 등의 감소에 기인
- 2023회계연도 4분기 누계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105조 8,180억엔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82.9% 수준이며, 국가 지출금액은 122조 583억엔으로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83.8% 수준
  - 2023회계연도 4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19.1%로 전년과 동일하며,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17.2%로 전년 동기 대비 1.1%p 증가
  - 2023회계연도 4분기 누계 특별회계 수납금액은 419조 9,207억엔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96.4% 수준이며, 국가 지출금액은 411조 2,997억엔으로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93.9% 수준

<표 6> 일본의 2023회계연도 4분기 예산사용 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275,803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1](D)	1,455,332	세입예산액(A)	4,352,264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1](D)	4,376,515
4분기 국가 수납 금액(B)	280,123	4분기 국가 지출 금액(E)	340,815	4분기 국가 수납 금액(B)	834,776	4분기 국가 지출 금액(E)	753,635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1.9 (32.5)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3.4 (24.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9.1 (19.1)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7.2 (16.1)
4분기 누계(C)	1,058,180	4분기 누계(F)	1,220,583	4분기 누계(C)	4,199,207	4분기 누계(F)	4,112,997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82.9 (89.8)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83.8 (78.4)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96.4 (97.9)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93.9 (94.8)

주: 1. (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4·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6. 25.

36) 예산사용 현황(予算使用の状況)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써, 각 부처 등이 매월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 상황과 소관·조직·항별 지출 상황 및 특별회계 등의 수지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

37)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4·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6. 25.,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3/05_4gai.html, 검색일자: 2024. 6. 26.

[기타]

■ 일본 내각부, 2024년 1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4. 6. 10.)[38]

- 전분기 대비 2024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5%(연율 -1.8%), 명목 GDP 성장률은 0%(연율 0.1%)로, 실질 GDP성장률은 1차 속보치와 동일하며 명목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39]에서 하향 조정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1%p로 민간기업설비 및 민간재고변동의 상향 조정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2%p)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4%p로 1차 속보치(-0.3%p)에서 하향 조정
  - (민간수요) 전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4%로 1차 속보치(-0.5%)에서 상향 조정

<표 7>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4년[1]
	Q1	Q2	Q3	Q4	Q1 (1차 속보치)	Q1 (2차 속보치)	
실질 GDP	1.1	1.0	-0.9	0.1	-0.5	-0.5	-1.8
국내수요	1.2	-0.6	-0.8	-0.1	-0.2	-0.1	-0.4
민간수요	1.5	-0.8	-1.0	-0.0	-0.5	-0.4	-1.6
민간최종소비지출	0.7	-0.7	-0.3	-0.4	-0.7	-0.7	-2.9
민간주택	0.7	1.8	-0.9	-1.4	-2.5	-2.5	-9.7
민간기업설비	2.4	-1.6	-0.2	1.9	-0.8	-0.4	-1.7
민간재고변동	(0.4)	(-0.1)	(-0.6)	(-0.1)	(0.2)	(0.3)	-
공적수요	0.2	-0.0	0.1	-0.1	0.8	0.8	3.1
정부최종소비지출	0.1	-0.4	0.2	-0.1	0.2	0.2	0.6
공적고정자본형성	1.0	2.2	-0.3	-0.2	3.1	3.0	12.5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2]	(-0.2)	5.2	(-0.1)	(0.2)	(-0.3)	(-0.4)	-
재화·서비스 수출	-2.4	3.8	0.3	2.8	-5.0	-5.1	-19.0
재화·서비스 수입	-1.5	-3.6	0.9	1.8	-3.4	-3.3	-12.7
명목 GDP	2.2	2.6	-0.2	0.7	0.1	0.0	0.1
GDP 디플레이터	1.0	1.5	0.8	0.7	0.6	0.5	-

주: 1. (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2023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1~3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38) 일본 내각부, 「2024年1~3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4. 6. 11.,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4/qe241_2/pdf/gaiyou2412.pdf, 검색일자: 2024. 6. 11.

39)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분기 대비 2024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5%(연율 -2.0%), 명목 GDP 성장률은 0.1%(연율 0.4%).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5월 재정동향」, 2024, p. 35를 참고(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2월 재정동향」, 2024,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 3. 18.)

[그림 2]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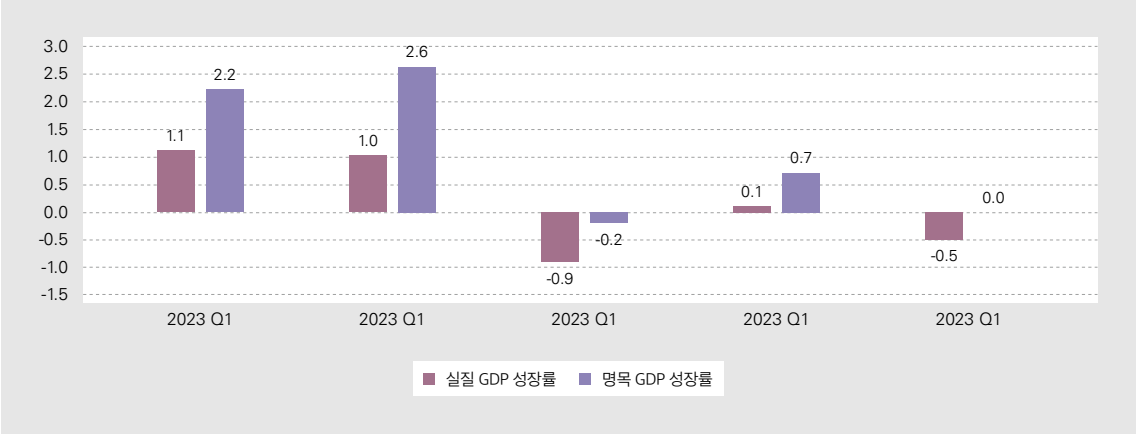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1~3月期四半期別ＧＤＰ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및 p. 7 표 3-3을 참고하여 작성

• 전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과 민간주택 증가율은 각각 -0.7%, -2.5%로 1차 속보치와 동일하며,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0.8%)에서 상향 조정된 -0.4%를 기록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3%p로 1차 속보치(0.2%p)에서 상향 조정

- (공적수요) 전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8%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전분기 대비 정부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2%로 1차 속보치와 동일하며, 공적자본형성 증가율은 3%로 각종 기초통계의 반영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3.1%)에서 하향 조정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수출입) 전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1차 속보치(-5%)에서 하향 조정된 -5.1%이며, 재화·서비스 수입 증가율은 1차 속보치(-3.4%)에서 상향 조정된 -3.3%

■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40] 각의 결정(2024. 6. 21.)[41]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4」은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40)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은 총리가 의장인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매년 6월경 각의 결정되며,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함께 경제, 재정, 행정, 사회 등 분야의 개혁의 중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 본 방침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제도 개혁을 진행(출처: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honebuto-index.html, 검색일자: 2023.6.19.)

41)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4 について」, 2024. 6. 21.,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4/2024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4. 6. 24.

● 사회과제 대응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 - 임금인상의 정착과 전략적 투자를 통한 소득 및 생산성 향상

- (소득 증가 및 임금인상 정착) 임금인상 지원, 노동시장 개혁 추진, 독점금지법 집행 강화, 하청 거래조사원 활용 등 가격전가대책 시행
- (중소기업 활성화) 자동화 기술 등 노동 절약형 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한 인력부족 대응,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혁신창출, DX·GX 관련 정책 촉진 등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 (투자 확대 및 혁신기술 사회구현) AI·반도체 분야 지원,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 의료, 개호, 교육,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DX 추진, 에너지 안보와 GX의 일체적인 추진, 우주·해양 등 프론티어 개척, 과학기술 진흥 및 이노베이션 촉진, 자산운용업 개혁 추진
- (스타트업 네트워크 형성 및 해외 연계성 강화) 스타트업 인재 육성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제 연계 및 대내외 직접 투자 등 추진, 콘텐츠 사업 해외 전개, 해외인재 유입,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추진
- (지방 창생[42] 및 지역 사회 과제 대응) 디지털을 활용한 지방 창생 가속화,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 교통 재정비, 관광 지원 등 지방활성화 및 교류 확대, 농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안전보장 강화
- (포용적인 사회 실현) 고령자·여성 활약 사회 지원, 테러방지, 국민보호 정책 등 안전·안심 정책 추진, 문화예술·스포츠 지원을 통한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
- (국제환경변화 대응) 외교·안전보장 강화, 경제안전보장 추진 체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안전보장 확보
- (방재·감재·국토강인화[43] 추진)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인프라 노후화 등에 대응하여 국토강인화 대책을 추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재생 추진, 노토반도 지진으로부터 복구·부흥 지원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경제·재정 신생 계획'

- (배경)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성장형 경제 구조로 전환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 (기본방침)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2030년도까지 6년간 경제·재정 일체 개혁을 추진을 통해,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42)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 문제와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출처: 일본 내각관방·내각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 검색일자: 2024. 2. 5.)

43) 국토강인화란, 지진 및 해일, 태풍 등 자연 재해에 강한 나라 만들기·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의미(출처: 내각관방, 「すすめよう災害に強い国づくり」, 2022. 1., 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oujinka/pdf/susumeyou_pamphlet_r401.pdf, 검색일자: 2023. 6. 26.)

도모하여 잠재성장률 인상과 사회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재정을 운영

- (재정건전화 목표)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현재 재정건전화 목표[44]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GDP 대비 채무잔고의 안정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여 경제 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
- (예산편성과 연계) 2025~2027년까지 3년간 지금까지의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하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기동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하면서 잠재성장률 인상을 위해 노력
- (세제 개혁)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등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세제의 구체화를 위해 포괄적인 검토를 추진
- (경제·재정 일체 개혁의 점검 평가) 본 기본방침, 개혁공정, 그 외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을 근거로 올해 말까지 EBPM의 강화 및 경제·재정 일체 개혁의 공정을 구체화, 매년 개혁의 진척관리·점검·평가를 실시 등
- (주요 분야별 과제)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구축,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공교육 재생·연구 활동 추진, 전략적인 사회자본 정비, 지방행정기반 강화

● 2025년도 예산편성 방침

-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경제 구조 강화를 추진하여 일본 경제를 성장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도록 함
- 2025년도 예산은 본 방침을 기반으로 편성하며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함
- 지속적·구조적 임금인상 실현, 민관(官民) 제휴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를 포함한 성장형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가속, 방위력 강화를 비롯한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주요 정책 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탄력 있는 예산을 편성
-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단년도 예산주의 폐해 시정에 힘쓰고 중장기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재정 운영 및 사회 보장 제도 구축 등을 추진

독일

■ 연방 내각, 「2024 독일 연방세법(Jahressteuergesetz 2024)」 및 「독일 연방교육진흥법(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BAföG)」 개

44) 일본은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18」을 통해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시기를 기존 2020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까지로 연장하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를 설정, 현재까지 재정건전화 목표가 유지되고 있음(출처: 일본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18について」, 2018. 6. 1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18/2018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6. 1.)

정(2024. 6. 5.)[45), 46)]

- 2024년 연간 세법은 EU차원의 요구 사항과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례법 결과를 적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입법, 조세 규정 단순화 등을 포함한 약 130개의 개별 조치를 통해 세법 전반을 개정
  - 연방재무부 보도자료에 작성된 「2024 연방세법」의 주요조치는 다음과 같음
    - (이동성예산[47)] 정액과세) 직원의 출퇴근, 출장 및 휴가 사용을 위한 교통비에 대해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2,400유로의 한도까지 25%의 균일비율로 교통비 지급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스쿠터, 차량 및 자전거 공유서비스 등과 같은 교통수단 옵션 확대
    - (과세이연 범위 확대) 자본투자(일반주식, 유한회사에 대한 주식 등)에 대한 과세이연을 양도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비영리 주택 한도 상향)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 목적 주거 시, 시장임대료보다 영구적으로 낮은 금액을 설정하여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지원의 한도를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상향조정
    - (맥주세 인하)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반가정 및 취미 양조업자의 맥주 생산에 대한 면세 수량을 기존 2hl(헥토리터)에서 5hl로 상향 조정
- 연방 내각은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환경을 개선하면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교육진흥법」의 추가 개정을 결정
  - 주요 변경사항은 기본생활수당 및 주거비 정액요금 인상 등이며, 변경 사항은 2024/25학년도 또는 2024/25 겨울 학기에 발효될 예정
    - 기본생활수당 5% 인상, 주거수당 380유로로 인상(기존 360유로)
    - 학업 지원[48)] 수혜자에게 추후 일회성 창업 보조금 1천유로 지원
    - 학과 변경 또는 대학, 전문대학, 학원 등에서 훈련 중단 시 중요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5학기까지(기존 4학기) 확대하여 훈련 중도 탈락 방지 및 부담 경감
    - 수혜자의 소득은 미니잡(시간제근로) 한도까지 허용되어 수혜 자격 유지 가능
    - 수혜자의 부모, 배우자, 동거인의 소득에

45) 독일 연방재무부, "Jahressteuergesetz 2024," 보도자료, 2024. 6.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6/2024-06-05-jahressteuergesetz-2024.html, 검색일자: 2024. 6. 12.

46) 독일 연방정부, "Die wichtigsten Änderungen beim BAföG," 보도자료, 2024. 6. 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bafoeg-reform-2024-2257882#tar-1, 검색일자: 2024. 6. 14.

47) 이동성 예산을 통해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버스, 기차, 자전거, 차량 공유서비스, 전기스쿠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장이나 휴가를 갈 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책정한 예산과 규정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와 별도로 제공. 이동성 예산은 최대 50유로까지 면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정액세율 적용

48) 학업지원은 학업을 시작하는 데 재정적 장애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노트북, 교육 및 학습 자료, 임대 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지원

대한 면제는 5.25% 상향조정되고, 대출상환에 적용되는 공제액 역시 5.25% 인상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1분기 공공채무 통계 발표(2024. 6. 18.)[49]

● 2024년 1분기 말 기준, 독일의 공공채무(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규모는 총 2조 4,614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3년 말 대비 157억유로(+0.6%), 2023년 1분기 대비 547억유로(+2.3%) 증가한 수준임
  - 2023년 2분기부터 공공부문에 포함된 지역 대중교통 운송회사의 채무를 제외하면 2023년 1분기 대비 증가율은 1.9%(458억유로)에 불과함

● 2023년 말에 비해 2024년 1분기의 채무 수준이 연방 및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사회보장 부문은 소폭 감소

- 2024년 1분기 연방정부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0.4%(65억유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관련)의 채무는 2023년 말 종료되어 연방정부 핵심예산으로 이관
  - 코로나19 경제안정화기금은 34억유로(-9.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연방군 특별기금은 23억유로(+38.8%) 증가
- 2024년 1분기 주정부 채무는 6,023억유로로 2023년 말 대비 69억유로(+1.2%) 증가
  - 바덴뷔르템베르크, 작센, 함부르크 등 채무 감소율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채무 증권 발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1.4% 증가한 1,561억유로, 사회보장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1.1% 감소한 2,210만유로를 기록

<표 8> 독일의 2024년 1분기 공공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채무 규모		변화율
	2024년 3월 31일	2023년 12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대비
합계	2,461,351	2,445,691	0.6
연방	1,702,905	1,696,384	0.4
경제안정화기금(코로나19)	33,559	36,912	-9.1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	71,744	-100.0
연방군 특별기금	8,062	5,808	38.8
주정부	602,333	595,418	1.2
지방자치단체	156,091	153,866	1.4
사회보장	22	22	-1.1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KORREKTUR: Öffentliche Schulden steigen im 1. Quartal 2024 auf 2,46 Billionen Euro" 보도자료, 2024. 6. 1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6/PD24_233_713.html, 검색일자: 2024. 6. 19.

49) 독일 연방 통계청, "KORREKTUR: Öffentliche Schulden steigen im 1. Quartal 2024 auf 2,46 Billionen Euro" 보도자료, 2024. 6. 1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6/PD24_233_713.html, 검색일자: 2024. 6. 19.

프랑스

■ 프랑스 회계감사원, 「2023년 사회보장부문 운영 상황 보고서」 발표(2024. 5. 29.)[50), 51)]

- 2023년 사회보장부문은 108억유로(GDP 대비 0.4%)의 재정적자를 기록
  - 2023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2022년에 비해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수지가 약 89억유로 개선됨
  -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경제 회복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둔화로 예산법 전망보다 적자가 37억유로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이 크게 악화된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105억유로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증가가 예상됨
- 2025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도래가 의료 및 사회보장부문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장부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년간의 개혁 프로그램이 요구됨
  - 중기 지출 규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를 도입해야 함
  -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52)]가

<표 9> 프랑스 2023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2023년 결산	2022년 결산 대비 2023년 결산	2023년 예산법 대비 결산
건강보험(Maladie)	-21.0	-7.2	-11.1	9.9	-4.0
산재보험(AT-MP)	1.7	2.2	1.4	-0.3	-0.8
법정연금기금(Vieillesse)	-3.9	-3.6	-2.6	1.3	1.0
가족수당국가기금(Famille)	1.9	1.3	1.0	-0.9	-0.3
자율연대국가기금(Autonomie)	0.2	-1.2	-0.6	-0.8	0.6
기존사회보장제도(total Robss) 총계	-21.0	-8.4	-11.9	9.2	-3.5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1.3	1.3	1.1	-0.2	-0.2
기존사회보장제도+노령연대기금(RG+FSV)	-19.7	-7.1	-10.8	8.9	-3.7

주: 모든 수치는 각 부문별 재정수지를 의미

출처: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e 2023, 2024. 5. 29

50)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La sécurité sociale :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Mai 2024," 2024. 5. 29., https://www.vie-publique.fr/rapport/294422-rapport-sur-lapplication-des-lois-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4. 6. 18.

51)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rapport sur l'application des lois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24,* 2024. 5. 29.,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securite-sociale-2024, 검색일자: 2024. 6. 18.

52)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의료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

사회보장 예산법의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S&P,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조정(2024. 5. 31.)[53), 54)]

- S&P는 프랑스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55)]하였으며, 단기 신용등급은 'A-1+'를 유지,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
-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2027년에도 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을 낮춤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5.5%를 기록하여 기존 전망인 4.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망 대비 낮은 재정수입 때문이며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시사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2026년 평균 4.6%로 전망되고, 2027년은 3.5%로 전망되어 2024년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9%보다 높은 수준
  -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소 조치 없이는 안정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
  - 프랑스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023년 109%에서 2027년 11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유로존 국가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

영국

■ 영국 보수당, 조기 총선[56)] 공약집 발표(2024. 6. 11.)[57)]

- (개요) 리시 수낙 총리는 ‘안전한 미래(secure future)’를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청년, 이민, 지역발전 등에 대한 공약들과 정책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

  * 본 장에서는 경제성장 및 정책 비용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 이외 분야에 대한 공약은 원문 자료를 참고 바람

- (경제성장) 경제활동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경제 강화를 위해 노력
  - ‘근로에 대한 이중 과세 종식’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국민보험료 기본요율을 현행 8%에서 2027년 4월까지 6%로 2%p 인하[58)]

53) S&P Global, “France Long-Term Rating Lowered To 'AA-' From 'AA' On Deterioration Of Budgetary Position; Outlook Stable,” 2024. 5. 31., https://disclosure.spglobal.com/ratings/en/regulatory/article/-/view/type/HTML/id/3189662, 검색일자: 2024. 6. 20.

54) 프랑스 국고청(AFT; Agence France Trésor), “FRANCE'S CREDIT RATINGS,” https://www.aft.gouv.fr/en/frances-credit-ratings, 검색일자: 2024. 6. 20.

55) S&P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2013년 이후 처음

56)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는 지난 5월 22일에 가을 즈음 예상되었던 총선을 5개월여 앞당긴 7월 4일에 치르겠다고 발표. BBC 외 여러 언론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가 개선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어 경제상황이 좋을 때 총선을 치르고자 했을 것이라는, 조기 총선 배경을 설명. 가장 최근 총선은 2019년 12월에 실시되었고, 총선 결과 650석 중 보수당이 368석, 노동당이 191석,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55석 등을 차지

57) Conservative Party, “Conservative Party Manifesto 2024,” Manifesto 2024, 2024. 6. 11., https://manifesto.conservatives.com/, 검색일자: 2024. 6. 17.

- 자영업자 국민보험료의 기본 요율을 2029-30회계연도 말까지 전면 폐지[59]
- 연금 수급자의 기본공제액(personal allowance)을 물가상승률, 소득증가율, 2.5%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트리플 락 플러스(Triple Lock Plus)' 시행
- 맞벌이 부모에게 자녀가 생후 9개월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주당 30시간의 무료 보육을 제공(가구당 연 평균 6,900파운드의 보육비 절약 효과)
- 현재 아동수당은 개인 소득이 6만파운드 미만일 경우에 지급되고 있는데, 가구 합산 소득이 12만파운드 미만일 경우로 기준을 변경
- 재생 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녹색 부담금(green levy)이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탄소중립 비용을 절감
- 추가적인 무역 협정 체결, 인프라 확충 가속화, 기업에 대한 관료주의(red tape) 감소 등에 노력

● (정책 비용) 보수당의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순 영향을 보면, 첫 해에는 약 10억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다음해부터는 복지제도 개혁 및 조세회피·탈세 단속으로 인해 지출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국민보험료 요율 인하, 트리플 락 플러스 시행 등의 조세 삭감으로 인해 2025-26회계연도에 62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에 172억파운드까지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복지제도 개혁 및 조세회피·탈세 단속을 통해 2025-26회계연도에 60억파운드에서 2029-30회계연도에 180억파운드까지 지출 감소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공무원 인원 축소, 국방예산 확대 등의 정책 수행으로 인해 2027-28회계연도, 2028-29회계연도에 각각 약 5억파운드, 4억파운드의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나머지 회계연도에는 약 5억~8억파운드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표 10> 보수당의 정책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5-26회계연도	2026-27회계연도	2027-28회계연도	2028-29회계연도	2029-30회계연도
조세 삭감	(6,207)	(8,407)	(14,488)	(15,601)	(17,206)
복지제도 개혁 및 조세회피·탈세 단속	6,000	11,000	14,000	16,000	18,000
정책 소요	(827)	(635)	517	385	(505)
합계	(1,034)	1,957	29	785	289

주: 괄호 안 수치는 소요 비용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지출 감소액을 의미

출처: *Conservatives, Costings Document,* 2024, Table 4.

58) 현재 기준소득~소득상한(월소득 £1,048~4,189)의 경우 8%의 기본요율이 적용되고, 소득상한(월소득 £4,189)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의 요율이 추가 적용

59) 현재 연간수익 하한~상한(£12,570~50,270)의 경우 6%의 기본요율이 적용되고, 연간수익 상한(£50,270)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의 요율이 추가 적용

■ 영국 노동당, 「조기 총선 공약집」 발표(2024. 6. 13.)[60]

● (개요)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변화(change)'를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청정에너지, 국가안보, 교육, 국가의료서비스(NHS), 국제관계 등에 대한 공약들과 재정계획을 발표

* 본 장에서는 경제성장 및 재정계획 파트의 주요 내용을 정리. 이외 분야에 대한 공약은 원문 자료를 참고 바람

● (경제성장) 투자활성화, 기업 과세,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공평하고 합당한 이민 시스템 정착, 근로 참여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 73억파운드 규모의 국부기금(National Wealth Fund)을 조성하여 성장 및 청정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고 전국 각지에 혁신적인 투자를 강화
  - 공공투자 1파운드당 3파운드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영국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
  - 항구 업그레이드 및 공급망 구축에 18억파운드, 15억파운드, 철강산업 재건에 25억파운드, 탄소 포집 설비에 10억파운드, 녹색수소 제조 지원에 5억파운드
- 기업들이 확실성을 갖고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기업 과세 로드맵을 발표
  - 보수당 정권하에서 법인세가 26차례 변경된 바 있는데, 노동당은 G7 국가 중 가장 낮은 현재 수준인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할 예정
  - 비거주 재산세[61]의 요율 시스템은 투자의욕을 약화시키고 불확실성을 조성하며 번화가에 위치 시 과도한 부담이 생기므로 더 공정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대체*

* 번화가 위치 기업과 온라인 거대 기업 간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 정신을 지원

- 신규 도로, 철도, 저수지 및 기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변화를 주도
  - 북부 전역의 철도 연결성 개선을 포함하여 산업 전략 및 지역 개발 우선순위에 맞춰 10년 인프라 전략을 개발
  - 2030년까지 완전한 기가비트 및 전국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노력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급여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체불대책을 마련
  - 지침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장벽을 제거하고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비자에 대한 적절한 제한, 이민정책과 기술정책의 연계를 통해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민제도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관리
  - 이주 자문 위원회를 강화하고, 영국 전역의 기술 기관, 산업 전략 위원회, 노동연

60) Labor Party, "Change. Labour Party Manifesto 2024," Labour's Manifesto, 2024. 6. 13., https://labour.org.uk/change/, 검색일자: 2024. 6. 17.

61) Business rates: 상점, 오피스, 펍, 창고, 공장, 휴가용 임대주택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과 같은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가정용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지역(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과 건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

금부와 공동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

• 보건, 사회 복지, 건설 등의 분야에 인력을 유입하고 훈련 계획을 세워 경제 일부 부문에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을 종식

-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Jobcentre Plus[62]와 National Careers Service[63]를 통합 운영하여 일자리 및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적응을 지원

• 장애인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동 작업, 보건 및 기술 제공에 자금을 할당

• 18~21세의 청년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과 견습의 기회를 제공

● (재정계획) 공공서비스 정책과 관련해 재원 마련과 정책 비용 계획을 발표

- 사실상 영국에 살지만 법적인 거주지를 외국에 둔 비거주자(non-dom)에 대한 과세 정비 및 조세회피 근절, 성과보수[64]에 대한 과세 정비 등을 통해 약 74억파운드의 재원을 마련

- 국가보건, 조세회피 근절 시스템, 교육, 지방재정 지원 등의 주요 정책에 약 48억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표 11> 노동당의 공공서비스 관련 재정 계획(2028-29회계연도)

(단위: 백만파운드)

재원	수입	주요 정책	비용
non-dom 과세 정비 및 조세회피 근절	5,230	매주 4만건 이상의 수술과 스캔 및 예약, 조세회피 근절을 위한 국세청 시스템 투자 등	2,555
사립학교에 부가가치세 및 비거주 재산세 적용	1,510	6,500명의 신규 전문교사 양성, 교사 및 교장 교육 강화 등	1,160
성과보수에 대한 과세 정비	565	정신건강 직원 8,500명 신규 채용, 재해 또는 국가적 사망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	450
영국 비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대한 인지세 1%p 인상	40	신규 기획담당관(planning officer) 300명 임명	20
-	-	지방재정 지원	650
합계	7,350	합계	4,835

출처: Labour Party, *Change - Labour Party Manifesto 2024,* 2024, p. 127, 재구성

62) 노동연금부 산하의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18~65세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복지혜택을 총괄. 채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구직 상담, 구직자 수당 관리, 훈련 및 기술 개발, 맞춤형 취업 지원, 고용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구직자와 고용주 간 격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

63) 정부 및 공공에서 제공되는 직업 정보 시스템으로 직업 정보뿐 아니라 교육, 훈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선택을 위한 조언 및 지도 등, 종합적인 진로 서비스를 제공(13세 이상 이용 가능)(출처: 김중진 외, 「국내외 직업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발굴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4, p. 27.)

64) Carried interest: 사모 펀드나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 펀드에서 관리자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수익에 대해 가지는 일정 비율의 수익 지분

호주

■ 호주 통계청, 2024년 1분기 국민계정 발표(2024. 6. 5.)[65]

- 2024년 1분기 호주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0.1%를 기록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4.9%), 교통(3.3%), 보건(1.2%) 등의 필수 지출이 증가한 반면 담배(-4.8%), 차량구매(-2.4%) 등의 지출이 감소해 전분기 대비 0.4%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분기 대비 0.9% 감소
    - 민간 투자 및 공공 투자가 전분기 대비 각각 0.8%, 0.9% 감소
  - 수출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전분기 대비 5.1% 증가

네덜란드

■ 네덜란드 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2024년 봄 기준」 발표(2024. 6. 7.)[66]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0.2%에서 2024년 0.5%로 소폭 증가하고, 2025~2026년에는 1.3%에 도달하여 네덜란드 경제는 2023년 경기침체 이후 완만한 성장경로로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경제는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소

<표 12> 호주의 2024년 1분기 국민계정

(단위: %, 계절조정)

구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6	2.1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1.0	4.1
가계(Households)	0.4	1.3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9	2.9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na	na
국민총지출(Gross national expenditure)	1.0	2.1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0.7	3.2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5.1	7.4
통계적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na	na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0.1	1.1

출처: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6. 5.

65)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6. 5.,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national-accounts/australian-national-accounts-national-income-expenditure-and-product/mar-2024, 검색일자: 2024. 6. 21.

66) 네덜란드 은행, “Goed nieuws: de economie groeit gematigd,” 2024. 6. 7., https://www.dnb.nl/algemeen-nieuws/achtergrond-2024/goed-nieuws-de-economie-groeit-gematigd/, 검색일자: 2024. 6. 7.

비자 신뢰도 상승,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에 기인한 가계소비(2024년 2.4%→ 2025년 1.9%) 증가가 정부지출(2024년 2.9%→ 2025년 2.2%) 증가와 함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었으며, 2025년 이후에도 GDP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는 의료, 사회보장, 국방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와 인프라 투자 증가로 구성

- 기업투자(2024년 -1.7%→ 2025년 1.4%)와 수출(2024년 -0.8%→ 2025년 2.4%)은 2024년에 감소하다가 2025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24년 3.8%에서 2025~2026년 4%로 소폭 증가하며, 인플레이션은 2024~2025년 2.8%, 2026년에는 2% 미만으로 하락하여 목표치(2%)를 달성할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2.4%, 2025년 2.5%, 2026년 3.7%,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47.1%, 2025년 48.7%, 2026년 50.9%로 악화될 전망

- 새로운 내각은 17차 예산자문단[67]이 권장하는 GDP 대비 최대 2%보다 더 높은 재정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추세기반 재정정책[68]을

[그림 3]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및 부문별 기여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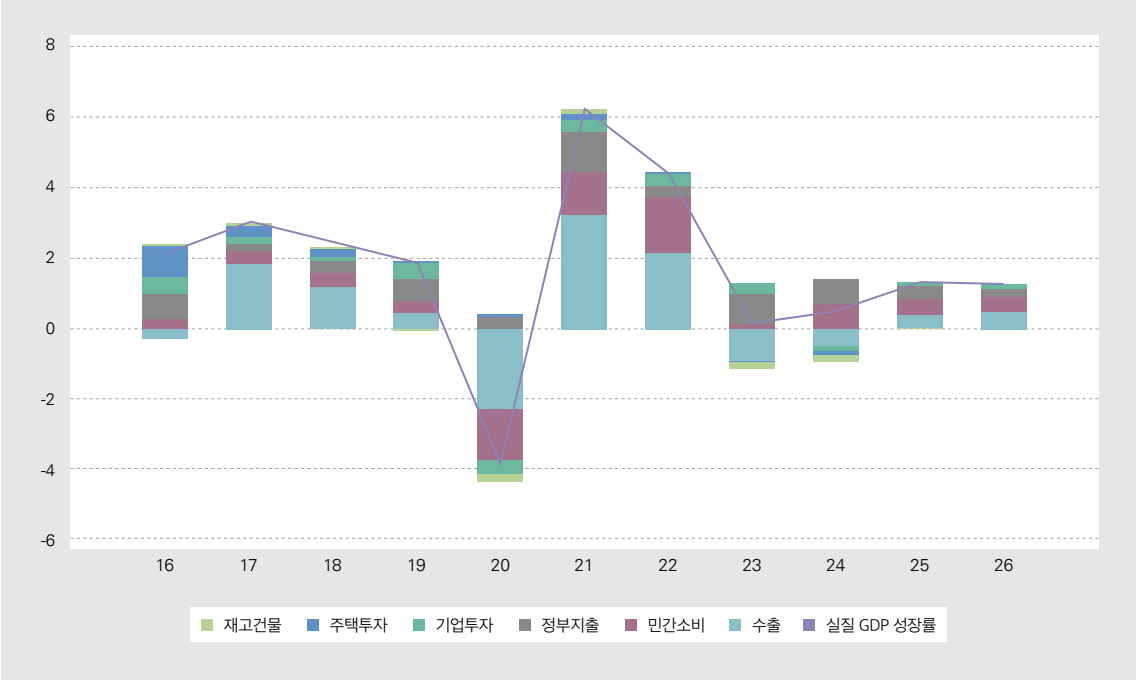

출처: 네덜란드 은행, "Voorjaarsraming juni 2024," 2024. 6. 7.

67)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1월호 재정동향」, 2024. 2." 참고

<표 13> 주요 거시경제 및 정부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내총생산(GDP)	4.4	0.2	0.5	1.3	1.3
가계소비	6.5	0.4	2.4	1.9	1.8
정부지출	0.8	3.4	2.9	2.2	1.6
기업투자	4.0	3.3	-1.7	1.4	1.7
주택투자	1.0	-1.4	-3.5	0.9	1.1
수출	4.6	-1.4	-0.8	2.4	2.6
수입	4.0	-0.7	-0.4	3.4	3.3
인플레이션(HICP)	11.6	4.1	2.8	2.8	1.8
근원 인플레이션	4.8	6.4	2.9	2.4	2.0
실업률	3.5	3.6	3.8	4.0	4.0
일반정부 재정수지	-0.1	-0.3	-2.4	-2.5	-3.7
국가채무	50.1	46.4	47.1	48.7	50.9

출처: 네덜란드 은행, "Voorjaarsraming juni 2024," 2024. 6. 7.

추구할 재정적 완충장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정책제언) 네덜란드 경제에는 지정학적 불안, 에너지 가격 변동과 세계무역의 둔화와 같은 해외 불확실성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권고
  - 1. 유럽 내부시장과 자본시장 연합 강화: 유럽 내부시장은 네덜란드 기업에게 유럽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인 판매시장을 제공하여 네덜란드의 무역과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유럽은행연합(European Bank Union)과 같은 유럽 내 자본시장 연합의 완료가 필수적
  - 2.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상태는 중기적으로 크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공급 증가율이 감소하고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
    -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 생산요소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모든 형태의 경제 활동에 대해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식과 기술 투자, 에너지요금 체계 개선,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축소,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와 같은 조치가 필요
    -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임
  - 3. 재정정책의 충분한 완충장치 유지: 재정적자는 유럽연합의 기준인 3% 대신 2%를

68) 내각이 1994년부터 사용해 온 추세기반 재정정책은 재정적자가 추세적 GDP(trend GDP)의 일정한 비율 이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것임

목표로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정적자를 3% 기준에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정부는 재정적 여유분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기업을 도울 수 있음

스웨덴

■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에 대한 현황 및 새로운 전망 발표(2024. 6. 24.)[69]

●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전망 대비 감소했으며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에너지 및 연료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 감소를 주도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유류세 인하로 연료 가격이 낮아졌고, 동시에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하락했기 때문
- 낮은 에너지 가격과 약한 경제 수요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스웨덴 경제는 2025년까지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점 회복하는 중

- 정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초점은 이제 퇴치(fighting)에서 모니터링으로 바뀌고 있으며, 스웨덴을 다시 번영하게 만드는 데 집중
- 스웨덴의 내수는 2024년 초에도 계속 침체되어 민간 소비와 주택 투자가 모두 감소
- 높은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스웨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올해 중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주택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경제는 2025년까지 침체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
-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부 장관은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동시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감소하며 2024년 초부터 계속 약세

- 2024년 내내 노동수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2025년에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69) 스웨덴 재무부, "The fight against inflation has been won," 2024. 6. 24.,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4/06/the-fight-against-inflation-has-been-won/, 검색일자: 2024. 6. 25.

<표 14> 2023~2027년 스웨덴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연간 변화율, %)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4. 4. 기준	GDP	-0.2	0.7	2.5	3.2	2.4
	CPI	8.5	3.1	0.8	1.6	2.1
	CPIF	6.0	2.1	1.7	2.0	2.0
	민간소비	-2.5	1.2	3.2	4.1	3.4
	실업률 (15~74세 노동력)	7.7	8.3	8.4	7.8	7.6
	고용률 (15~74세 노동력)	69.4	68.9	69.0	69.6	69.8
	정책 금리	3.46	3.85	2.71	2.25	2.25
2024. 6. 24. 기준	GDP	-0.2	1.4	2.4	3.1	2.2
	CPI	8.5	2.8	0.9	1.7	2.1
	CPIF	6.0	1.9	1.7	2.0	2.0
	민간소비	-2.3	1.0	2.6	3.8	3.2
	실업률 (15~74세 노동력)	7.7	8.4	8.3	7.8	7.6
	고용률 (15~74세 노동력)	69.4	69.1	69.4	69.8	70.0
	정책 금리	3.46	3.73	2.70	2.25	2.25

출처: 스웨덴 재무부, "Key indicators forecast 24 June 2024," 2024. 6. 24.,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3b7f397fcdac44df94c18c2fa463b97d/key-indicators-forecast-24-june/, 검색일자: 2024. 6. 25.

재정포럼

2024년 7월호 통권 제337호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 행 인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 집 간 사 장정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 · 제작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월간 재정포럼

2024년 7월 19일 발행 / 통권 제33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7월 19일 발행 • 제337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7 • 월간 • ISSN 1226-2269 7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